

SAd.a.11

정신대 자료집 II

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가?

1992. 8

1992. 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2호
☎ 365-4408, 9

정신대 자료집 II

1992. 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권 두 시	2
성신대(종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입장	
/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3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강제로 끌려간 한국여성들 “정신대(군대위안부)”문제	
/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5
정신대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 김찬규.....	8
일본법정에서의 정신대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안상운.....	11
한국 태평양 희생자 문제에 대하여/ 양순임.....	22
일제 피해(정신대) 청원심사 질문/ 이수인.....	27
정신대 문제의 실상/ 정진성.....	33
천황제, 군국주의, 여성/ 정진성.....	39
‘정신대 규명’ 일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정진성.....	44
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가?/ 정진성.....	46
정신대문제 해결운동의 전개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윤미향.....	49
일본의 제 123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 6호.....	57
일본의 제 123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 13호.....	71
일본의 「전후보상」에 대해서/ 다가끼 쟁이찌.....	78
전후보상에 대한 활동/ 오가자끼 도미코.....	83
소장.....	87
활동일지.....	123
성명서.....	125
정신대 관련 주요 신문보도자료.....	131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장정임

위.안.부
누가 역사의 수령속
피고름으로 얼룩진 그대들 이름 잊으랴
무명의 그대들, 빛도 없이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
온몸으로 온몸으로 처받았거니
무시무시한 정글속
진흙 구덩이
포탄 속을 헤쳐가며
그대들 때론 탄약운반원
그대들 때론 부상병 임시간호원

.....
그대들, 하룻밤 수십 명의 왜놈들
날카로운 성기의 창끝에 찔려
아랫도리 피고름으로 아물날 없고
결국 성병으로 말라리아로
나무토막처럼 꽉꽉 쓰러져 갔다지
컴컴한 지하 방공호 속에 갇혀
누가 그대들 무참히 짓밟았는가
가슴 속 피맺힌 한을 품고
누가 그대들 가슴에 자결의 비수 꽂게 했는가
그대들의 상처받은 자궁
민족의 자궁
처절한 그대들의 이름
위.안.부
우리들의 어머니

매춘관광 꽃바람 타고
외화획득 경제성장 역군되어
식민치하 가난에 몸을 떨던
위안부의 어린 딸들
대한의 딸들
오늘 또 다시 엔화에
목숨같은 몸을 파누나
끌도 없는 역사의 수령 속
상처와 억압과 수모
죄악과 죽음
차별과 한만이
그대들의 이름이라고,
착취의 그늘
수치와 고통
아픔과 눈물만이
그대들의 숙명이라고,
.....
누가 말하는가
우리들의 어머니
위.안.부
짓밟힌 민족의 어머니시여

정신대(종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입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 머리말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45년이 지난 이후에야 정신대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 되게 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미소 냉전의 와중에서 우리가 분단되고, 대미 의존적인 상황에서 친일세력을 제거하지 못하고 자주적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서 한·일 협정이 식민자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한 채 체결되었고, 정신대 문제는 양국간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소수 살아남은 희생자들 조차도 여성의 순결을 생명보다 중요시 하는 엄격한 가부장제 문화속에서 자신이 당한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 왔다. 그 시대 처녀공출의 위협하에 살았던 모든 여성들은 한·일 양국의 철저한 은폐로 인하여 그 처절한 진상과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 아픔과 한으로 여기고 살아 왔다.

이후 자주적, 민주적 정부를 수립하고 민족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족민주 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의 성장에 따라서, 식민지 지배와 민족수난사 속에서의 여성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별히 일본인에 의한 한국여성의 성침탈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기생관광에 반대하면서 정신대 문제를 재조명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정신대 희생자 자신들의 죽음을 가까이 한 나이에 이르러 50년 동안의 고통과 한을 딛고 일어서서 중언에 나서게 된 것이 정신대 문제를 역사의 전면에 떠올리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전후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정치, 군사 대국화를 기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2차 대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해결없이 군사 대국화 하는 것에 대하여 과거 '대동아 공영권'을 앞세운 침략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전후문제 처리에 대하여 양심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에 임할 때만이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이웃관계가 정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길만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아세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2. 전상규명이 문제해결의 최우선 과제이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정신대 문제에 대하여 그 사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책임을 부인해 왔으며, 최근에 와서야 마지못해 국가의 책임을 시인하고 사과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일본정부는 전상을 적극적으로 조사 규명하려는 노력이나 사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흐리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배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일본정부가 하루 빨리 정신대 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1) 정부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으로 조속히 조사를 실시하

라. 제도적, 정책적 측면과 실제로 명령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관련된 군부의 전체적, 체계적 구조와 규모, 관리 경영의 집행자의 책임을 조사하고, 관련 생존 군인들의 증언을 직접 조사하고, 생존 정신대 희생자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 조사해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진상규명의 사실에 기반하여 일본 천황과 정부, 국회의 사죄를 공식문서화 할 것을 요구한다.

3) 정신대에 관련된 모든 문헌, 사진, 시설, 물증, 증언들을 모아서 보관 전시하고, 일본 교과서에 수록하고, 추모비를 세우라. 이것은 일본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역사는 은폐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4) 이러한 역사적 범죄에 대한 '사죄'의 표시로서 배상금을 지불하라.

3. 왜 '배상을 요구하는가'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은 그것이 인도에 대한 죄이며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이고, 동시에 강제매춘금지에 대한 위반이라는 데 있다.

1) 정신대는 '일본천황이 황군에 내리는 하사품'으로서 이것은 바로 여성의 성적 노예화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전후 이들을 현지에서 살육하고 유기하였다. 이는 인도에 대한 죄 중 "노예적 혹사 및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에 해당된다. 인도에 대한 죄는 실행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계획, 모의, 교사한 자 또는 이에 가담한 자도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 천황을 포함한 일본정부의 관련자들은 이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2) 정신대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요한 침해이다. 정신대는 청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자유권에 대한 침해이다.

이와 같은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정부는 정신대 희생자들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일제 조선 강제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희생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보상 compensation은 합법적 행위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면, 불법적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 reparation이라고 정의한다.)

일본은 식민지 정책에 있어 우리 민족의 말살정책을 궁극적 과제로 삼았다.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성과 이름을 고치도록 강요했고, 가족제도의 일본화를 실시했으며, 특히 여성의 재생산 기능의 파괴를 목적으로 10-20만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집단강간을 하였다. 이것은 정신대로 끌려간 여성들만이 희생자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여성들이 처녀공출의 대상이 되어 공포속에서 살아야 했던 점에서 같은 피해자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정신대 정책은 우리 민족말살 정책으로서 모성을 파괴하려 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행위이다. 그런데서 한국여성 전체에 대한 배상 뿐만 아니라 정신대 피해 당사자로서 살아 남은 소수 생존자들에 대한 배상은 마땅히, 그리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1992년 6월 7일
'태평양전쟁 희생자 증언을 듣는 모임에서'

일본 군대의 성 노예로 끌려간 한국 여성들 "정신대(군대위안부)"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10년 일본에 합병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혹독하고 억압적인 일본의 지배 아래 고통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한국민족에게 갖은 수탈과 억압이 가해졌지만 한국의 여성들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걸쳐 있던 일본군대의 성노예로써 강제동원한 일이야 말로 그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고 잔혹한 것 이었다.

최근에 와서야 한국여성들 및 양심적인 일본여성들의 노력에 의하여 "정신대"(군대위안부) 문제가 1937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일본의 군대와 정부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한국여성들(그리고 다른 몇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례로써 세계인의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창립되어, 이제까지 은폐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문서와 여러나라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생존한 "정신대"(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이 점차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을 증언하기 위해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보상청구 소송도 일본법정에 이미 제기되었다.

대부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참화로 인한 상처를 입고, 자신들이 겪은 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껴온 "정신대"(군대위안부) 여성들은 이제 역사 앞에 일본 군대에 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제로 끌려간 한국여성들에게 가해졌던 강간과 인권유린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10만 내지 20만에 달하는 식민지 여성들이 식민 통치자들에 의해 성의 대상물로 취급당한 경우는 아마 역사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일본의 수상은 최근까지 일본정부가 부정해 왔던 "정신대" 관여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다.(많은 사람들이 미흡한 사과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관련사실을 규명하는 작업과 끌려간 여성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작업은, 오랫동안 정신대 만행이 은폐되어 왔다는 점과 피해 당사자들의 수치심 때문에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시에도 많은 수의 한국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1937-38년 일본이 중국 침략을 시작하면서 17세에서 20세에 달하는 한국의 가난한 집안 여성들(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들도 포함되었다.)이 일본군대가 진출해 있는 태평양 전역으로 본격적으로 보내어지게 되었다.

최근 목격자들의 증언(일본의 처녀들, 전직 군인들, 전직 군의관들의 증언을 포함하여)에 따르면, 한 명의 "정신대"(군대위안부)는 하루 평균 30-40명에 이르는 군인들(방 앞에 줄어서 기다리고 있는)을 상대하여야만 했다고 한다. 이 때, 그 비인간화의 정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일부지역에서 "정신대"(군대위안부) 여성들에게 오직 일본식 성(姓)만을 붙여 주었고, 나중에 어떤 곳에서는 그들을 번호로 불렀다는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말기에

어떤 한국여성들은 매일 65명에 이르는 군인을 상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오끼나와 여성은 한 한국여성이 하루에 100 명의 일본군인을 상대하도록 강요당 했던 사실을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잔악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의 성착취는(많은 사람들이 나라 전체에 대한 강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신대”(군대위안부) 여성들에게 극한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바. 이는 구타나, 만연한 질병, 유산, 죽음 등으로 인한 고통과, 일본의 퇴각시 “정신대”(군대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유기 및 학살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이 어디서 살고 있던 간에, 한국사회가 목숨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정조를 상실한 데서 오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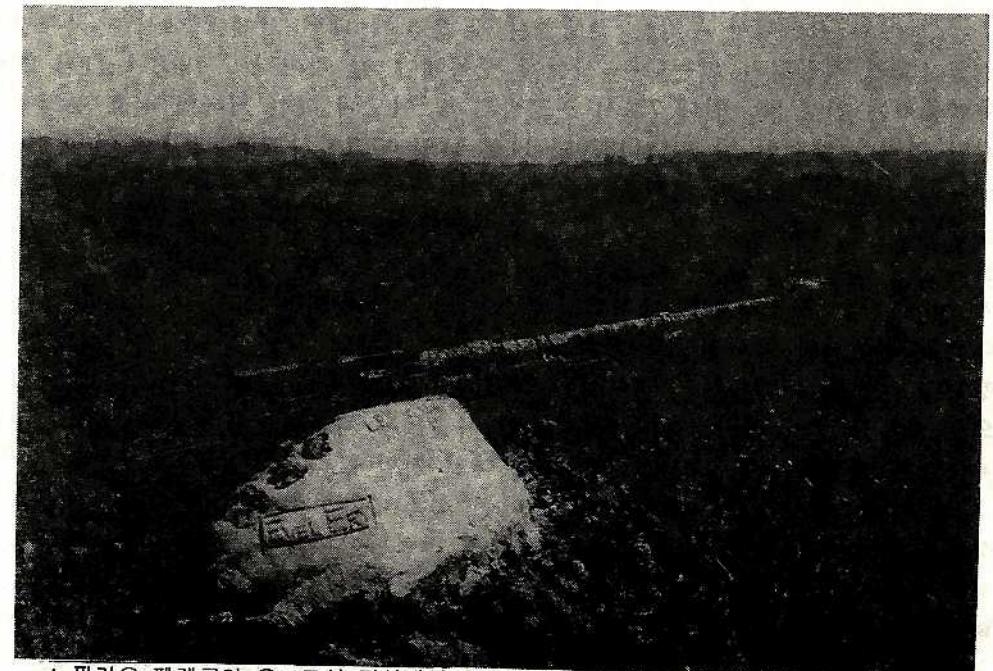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정신대”(군대위안부) 여성에 대한 만행의 전모를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 정확한 통계를 내는 일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본군인의 숫자와 “정신대”(군대위안부) 여성들이 하루에 상대한 것으로 드러난 군인의 평균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의 수치를 알아낼 수 있다. 몇 개월 이후면 더 많은 문서와 증언들이 이제까지 입증된 사실들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추정된다. 1월 14-16일 일본 도쿄에서는 “정신대”(군대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인들의 전화를 받기 위해 신고전화가 설치되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확증시켜 주는 새로운 구체적 사실들이 증언되어지고 있다. 그 한 예가 적어도 한 사람의 “정신대”(군대위안부) 여성이 나가시마 섬의 나병환자 요양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언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들에 호소하면서, 우리는 “정신대”(군대위안부) 여성들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일본정부와 천황은 이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기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개별 희생자들과 한국, 그리고 한국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성 노예로 강제 징용된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에게 전면적이고 납득할 만한 완전한 공개사과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은 신고를 한 소수의 여성들에게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얼마간의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많은 이들을 포함하여, 한국여성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인정한다는 뜻에서 국가대 국가간의 경제적 배상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2. 일본정부는 한국정부 및 관련 국제조직과 적극 협력하여 정신대 문제의 모든 측면에 걸쳐 가능한 한 모든 사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상의 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3.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증언할 의사가 있는 일본국민들이 보복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4. 일본정부는 “정신대”(군대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에게 완전하고도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일본정부는 모든 “정신대”(군대위안부) 여성들을 추모하고, 후세에 여성 및 타국 국민들의 인권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교육시키기 위하여 일본 내에 합당한 추모비를 건립하여야 한다.
6. 일본정부는 모든 교과서를 수정하여 한국 국민에게 가한 식민지적 억압의 일부로서 “정신대”(군대위안부)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여성의 성적 예속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일본이 이처럼 엄청나고 장기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관련사실을 지속적으로 은폐해 온 것에 대하여 엄중 항의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지난 2월 본협의회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접수시킨 내용이다.)



▲ 팔리우 펠렐류의 우므로산 정상에서 종군위안부가 쓴 기관총

정신대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

김찬규(경희대 법대교수)

1. 정신대 문제는 과거지사인가?

1) 이 문제는 태평양전쟁 때 있었던 일이기에 종전후 46년이 지난 지금 법적으로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각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행이 있었던 것은 46년 전의 일이지만 쟁점으로 등장한 것은 현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개입 내지 주도적 역할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그것은 민간인들이 한 일이기에 정부로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특이였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일이 자행되었다는 물증이 잇따라 발견되자 일본정부는 관련을 시인치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시인한 것이 현 시점이므로 그것은 현재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68년 11월 26일 유엔총회는 찬성 58, 반대 7로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의 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바 있고(1970년 11월 11일 발효), 1974년 1월 25일 유럽 이사회는 자체의 「인도에 대한 죄 및 전쟁범죄에의 시효 부적용에 관한 유럽협약」을 채택하여 서명에 개방한 바 있다.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의 시효 부적용과 관련해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1969년 7월 3일, 당시 서독의회가 이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은 2차 대전을 전후해서 침략전쟁의 개시 및 3백만의 유태인 학살 등 수많은 악행을 자행했다. 전후 뉴욕베르크에 설치된 국제 군사 재판소와 전승 연합국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군사 재판정을 통해 중요한 사건들이 처리되었지만 서독은 서독대로 국내법의 제정을 통해 나치스 전범들에 대한 처벌에 나섰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서독의 국내법에선 공소시효가 1969년 12월 31일 끝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당시 아직도 많은 전범들이 체포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1969년 7월 3일 서독의회는 마침내 나치스 전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독일인들의 양심과 인류 및 역사에 대한 숙연한 자세를 보게 된다. 인류와 역사에 대한 동일한 대죄를 범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려고만 드는 일본과는 달리 서독은 스스로 속죄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3) 1965년 6월 26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이 협정에는 「양체약국(兩締約國)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 ⑧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는 조항이 있는데(제 2조 1) 「최종적으로 해결

된」 것에는 정신대에 관한 문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쟁점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정신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정부로서의 관련을 시인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지금까지 그들은 민간인들이 한 일이기에 정부로서는 아는 바도 없고 또한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기 협정의 체결시 생각지 못했던 일이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것은 상기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1)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은 그것이 인도에 대한 죄이며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이고 동시에 강제매춘 금지에 대한 위반이라는 데 있다. 이 중 인도에 대한 죄는 2차 대전후 독일 전범을 재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 제 6조와 일본 전범을 재판하기 위해 제정된 극동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 제 5조 그리고 양군사 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정립된 개념이다.

상기한 두 조례에는 인도에 대한 죄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전쟁전 또는 전쟁중 주민일반에 대해 자행된 살상, 잔혹, 노예적 혹사, 강제이주 및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범행지국의 국내법에 대한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박해행위」라는 것이다.

정신대는 이 가운데서 「노예적 혹사 및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와 관련된다. 정신대라는 말은 몸바친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부녀자가 몸을 바쳐 황군을 위안하고 그것을 통해 聖戰을 수행한다는 것이 일제의 논리였는데 이것은 聖戰노예를 미화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다. 정신대는 바로 성적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다.

상기한 두 조례에는 인도에 대한 죄를 실행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계획, 모의, 입안, 교사한 자 또는 이에 가담한 자도 처벌한다고 했다. 두 조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이 직책상 또는 상관의 명령에 의해 본의 아니게 이 죄를 범행했다는 주장은 정황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 지연정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상기한 두 조례 및 이를 근거로 한 판결을 1946년 12월 11일 유엔 총회에 의해 국제법의 제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재확인 되었다. 여기서 「재확인」이라 함은 이미 확인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뜻으로 두 조례 및 이를 근거로 한 판결의 내용이 그에 앞서 국제법으로 확립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2차 대전 후에 있은 전범재판이 사후 입법을 통한 재판이 아니라는 데 대한 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2) 정신대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요한 침해이다. 인권법상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을 인권에 관한 기본 3권이라 하거나와 이같은 논리가 지탱될 수 있는 대전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없이는 인권에 관한 기본 3권은 물론이고 인권자체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의 정조는 생명, 신체 자유와 동일수준의 개인적 보호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문명제국에 의해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인 것이다. 정신대는 정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따라서 그것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국제법상 기본적 인권의 보호는 강행규범으로 되어 있으며 대세적 의무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서 강행규범이라 함은 「그로 부터의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고 동일한 성격을 가진 후속하는 일반 국제법의 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규범으로 국가로서 구성되는 국제사회 전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3) 정신대는 강제매춘금지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다. 여성을 상품으로 이용하는 일, 특히 매춘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해 매춘하는 일이 반인륜적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에 대한 금지가 국제조약으로 나타나는 것은 1904년의 백인노에 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정이 처음이었다. 그로부터 6년 후에는 「백인노에 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고 1921년에는 「부녀자 및 아동의 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모든 조약을 통해 부녀자의 매매, 특히 강제매춘이 엄격히 금지되고 이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단속할 의무가 당사국들에게 지워졌다. 이를 집대성한 것이 1949년에 채택된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 착취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었다.

정신대는 이들 국제조약이 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의무에 위반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앞서 정신대라는 것이 태평양전쟁 때 일제가 만든 종군위안부 조직임을 보았거니와 일제는 이를 위해 한국에서 「처녀사냥」을 했다. 이것은 정녕 인신매매이며 강제매춘의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일에 국가가 직접 개입한 사례이기도 하다.

4) 정신대 문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일본 국내법상의 권리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것인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도에 대한 죄이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이고 강제매춘 금지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것은 국제강행 규범에 대한 위반인 동시에 대세적 의무에 대한 위반이기에 이를 바 국내법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이 글은 '92년 4월 22일 정대협 주최의 "정신대문제와 한일정부의 책임" 공청회시 발표된 내용이다.)

일본법정에서의 정신대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안상운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I. 머릿말

1991. 12. 6. 일제에 의해 군인, 군속, 군대위안부로 강제로 징집되어 끌려간 박칠분씨 등 35명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중 군대 위안부는 김학순씨 등 3명이 포함되어 있다. 한일 양국 간에 이른바 과거청산 문제는 언제나 현안문제였고 여전히 그러하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입으로만 반성하느니, 사죄하느니, '통석의 봄'이나 외침 뿐 진상규명과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사실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교과서 파동에서 보듯이 역사왜곡을 서슴치 않고 있다. 수백만명의 조선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몰 때는 내선일치를 내세웠으면 서도 폐전국으로 전락되자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은 물론이고 연금이나 의료비 부담 마저도 회피하고 있다.

개인 대 개인간의 소송문제도 까다로운 것이 현실인데 개인이 국가를, 더구나 본국이 아닌 외국국가를 상대로 그 나라의 법률과 법절차에 따라 소송한다는 것은 더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특히 일본정부가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 축소, 왜곡해 온 상황에서 최소한 47년 전의 사건을 원인으로 소송한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는 큰지 모르나 소송 자체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서는 위 소송을 중심으로 실제 재판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II. 일본은 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1. 일제의 식민지 지배

1) 일본정부가 정신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제국주의의 야욕으로 한반도를 강제로 합병하여 식민지 지배를 실시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1929년 세계공황이 일본에도 파급되자 그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아시아 대륙 침략 전쟁을 펴게 되어 1931년 만주사변, 1932년 상해침입, 1933년 국제연맹탈퇴,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진주만공격 등 침략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조선은 일제침략의 병참기지로 전락되어 물적 지원 뿐만 아니라 조선의 아들, 딸들은 징병, 징용, 정신대로 강제 동원되었다.

2) 특히 1937. 4. 일본 각의는 '국민정신 총동원 실시요강'을 만들어 여성활동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에의 여성동원을 촉진시켰으며 1938년 국가총동원

법을 제정하여 이를바 황민화 정책을 강행하였고 1941. 8.에 국민징용령 2차 개정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징용도 가중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41. 11에는 '국민근로보국 협회령'을 제정하여 14세 이상 25세 미만 여자에게 1년에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국민근로보국대에 의한 협력을 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1943. 6에는 14세 이상 25세 미만 여자에게 1년에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1944. 11월에는 14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자에게 1년에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국민근로보국대에 의한 협력을 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1943. 9에 '여자근로동원 촉진에 관한 건'을 결정하여 여자 근로정신대를 편성하였으며, 1944. 8. 23. '여자 정신근로령'을 공포하여 12세 이상 40세 미만 여자로 정신대를 편성하여 1년간 복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대도 법률적 강제대상으로 편입되었다. (세계일보, 91. 1. 16자)

이에 따라 일본정부와 일본군은 필요한 여자를 뽑아 면사무소 등을 이용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이름바 '관알선'이라는 강제력을 배경으로 군인의 일을 들봐 준다는 등으로 속여 조선의 여자들을 강제 연행하거나 납치, 회유하여 군대위안부로 내 보냈다.

3) 일본정부는 금년 1월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 전까지는 정신대 존재자체를 부인하면서 '징용의 대상업무는 국가 총동원법에 기초한 총동원 업무이며 법률상 열거되어 있는 업무와 종군 위안부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다'(1990. 6. 일본국회에서 노동성 관리의 답변), '당시의 관계자들로부터 사정을 청취한 바 후생국 근로국도, 국민근로 동원서도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조사하려고 노력했으나 단서가 없다'(1991. 4. 일본국회에서 일본 노동성 관리의 답변)고 주장해 왔으나 그 뒤 일본의 천황과 일본정부, 일본군부가 정신대의 모집, 착출, 배분, 수송과 관리에까지 계획적 조직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자료와 증언이 쏟아짐에 따라 미야자와 총리도 금년 1월 방한시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경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충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4) 일본의 천황, 일본정부, 일본군부가 정신대의 모집, 착출, 배분, 수송과 관리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밝혀주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 1938년 육군교육 총감부가 작성한 '전시복무제요'
- . 1938, 3, 4 육지밀대일기(陸支密大日記)에 포함된 '육군성의 부감이 복지방면군 및 중지방면군 참모장에게 보내는 통첩안'
- . 1938. 7. 작성된 보병 제 41연대 진중일기, 보병 제 9여단 진중일기
- . 1938. 12. 제 2군 상황개요
- . 1939. 4. 전시준비 '위안소의 상황'
- . 중국의 관동주에 주둔했던 제 21군이 1939. 4. 11- 20 까지 작성 "현재 위안부 수는 1천 여명으로 이중 350여명은 군의 통제하에 모집된 인원"
- . 1939. 상해 육군군의관 작성의 '전장보고의견집' 중 화류병의 적극적인 예방법

- . 1942. 육군성 부관 명의의 통첩, '대동아 전쟁관계 장병의 성병처치에 관한 건'
- . 1942. 5. 해군성 군무국장, 병비국장으로부터 남서방면함대 참모장 앞으로 보낸 제 2차 특요원전출에 관한건 조회(문예춘추 1955년 12월호)
- .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나의 전쟁범죄)
- . 1943. 5. 서부군 사령부는 200명의 조선인 위안부 착출명령
- . 1944. 4. 육군 의뢰에 의해 야마구치치 현 지사가 밝힌 동원명령서에 군사위문 조선인 여자 정신대 100명 기록
- . 麻生徵男 (전선의 애인 考)
 - 상해 육군 위안소 "몸과 마음을 다바쳐 성전에 참가한 용사를 환영한다."
 - 위안소 규정 "본 위안소는 육군 군속이외의 입장을 불허함. 입장자는 위안소 외출증을 소지할 것"(병참 사령부)
- . 山 제 3475부대 내부 규정(1944. 12)등 '구인구락부에 관한 규정' 부칙 "일반적으로 영업작부의 공유관념을 철저히 하여 점유의 관념을 엄금 한다."
- . "작부는 사용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함을 제일로 하여 사용자에게 최대로 봉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몸을 다치게 하거나 봉사를 빠뜨리는 일이 절대도 없도록 만사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 "영업 작부는 공공연히 철책밖을 산책하거나 막사 또는 작업장 등에 출입함을 금한다."
- . 일왕칙령 제 519호 (1944. 8. 22. 공포. < 세계일보 92. 2. 8. 자> 일왕이 서명하고 내각 총리대신등 4명의 대신이 부서한 - '여자정신근로령' (전문 23조)
- . 제 2조 '국가총동원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여자가 여자 정신대로서 하는 근로협력을 국가 또한 지방 공공단체 또는 후생대신과 지방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명령으로 정하는 총동원업무로서 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 제 6조 "지방 장관은(조선-도지사) 여자정신대의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윤, 구장, 읍면장 기타 학교장에 대해 대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도록 명령하도록 함"
- . 제 9조 "정신근로영장을 받은자는 지방장관의 지시에 복종하여 정신근로해야 함"

2. 패전국으로서의 일본의 배상책임

- 1) 1910년 한일합병에 의해 조선은 일본의 영토가 되고 조선인은 일본식민으로서 일본국적을 가지게 되어 조선인 군인, 군속 및 군대위안부들은 각기 강제적으로 연행되었다.

2) 그런데 1943년 11월 27일의 카이로 선언은 “전기의 3대국(미국, 영국 및 중화민국)은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곧 조선을 자유독립시킬 것을 결의 한다.”라는 것이고 1945년 7월 23일의 포츠담선언 제 8항 전단은 ‘카이로 선언 조항은 이행되어야만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일본은 그 해 8월 15일 이것을 수락하여 무조건 항복하였다. 게다가 1951년 9월 8일 일본은 연합군과의 사이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는데(1952년 4월 28일 발효), 그 2조 a항은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연합군은 전쟁종결에 있어 카이로선언에서 조선인민이 ‘노예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여 여기에 유리하여 ‘조선을 자유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여 이것을 포츠담선언에 의해 일본에 대해 그 이행을 요구하였다. 즉 연합군은 조선의 독립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 시작된 일본에 의한 조선반도의 식민지 지배를 종료시키고 조선인의 ‘노예상태’로부터의 회복을 당연한 전제로 일본의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의 결과를 침략전의 상태로 돌려 놓는다는 원상회복을 기도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이것을 수락하였고 평화조약 2조(a)항은 일본이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인한 것이다.

3) 그러므로 조선인에 대한 침략의 결과로서의 ‘노예상태’로부터의 회복이란 그 후 일본이 취한 韩人주권의 방기라는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조선인을 ‘노예상태’에서 회복시킴을 의미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고향에서 외지로 강제연행되어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귀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노예상태’에서의 회복이며 군인, 군속으로서 일본을 위해 희생하여 사망, 부상한 자에 대해서는 그 물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노예상태’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군대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군병사의 성욕 처리도구가 된 것 자체가 ‘노예’ 이외의 그 무엇이 아닌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노예상태’의 회복이다. 왜냐하면 해당 군인, 군속, 군대위안부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침해결과가 언제까지 보상되지 않는 한 강제연행에 의한 침략결과로서의 ‘노예상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일본은 포츠담선언 및 위 평화조약에 근거해 조선인의 ‘노예상태’로부터의 회복을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조선인 군대위안부에 대해 그 물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3. 일본의 국제법, 실정법적 배상책임

1)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의 근거는 그것이 인도에 대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이며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이고 동시에 강제매춘금지에 대한 위반이라는다 있다(김찬규,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법률신문 제 2098호(1992. 2. 6자)).

첫째, 일제가 조선여성을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강제동원한 것은 인도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인도에 대한 죄는 2차 대전 후 독일전범을 재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 군사재판소(총청IMF) 조례 제 6조 C항과 일본의 전범을 재판하기 위해 제정된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 5조에 근거하고 있다. 위 조례에 의하면

인도에 관한 죄란 “전쟁전 또는 전쟁중 모든 민간인에 대해 행해진 살인, 섬멸, 노예적 혹사, 강제이주(추방) 및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범행지의 국내법에 대한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박해행위”라는 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에 대한 죄가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체제가 점멸을 가하고 있는 일정이념이든 인종적 특성이든 보유자로서의 개인 또는 집단이다. 또한 위 조례는 인도에 대한 죄를 실행한 자 뿐 아니라 이를 계획, 모의, 입안, 교사한 자 또는 이에 가담한 자도 처벌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직책상 또는 상관의 명령에 의해 본의 아니게 이 죄를 범했다는 주장은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 인정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는 1946. 12. 11.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국제법의 제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인도에 대한 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인간존재에 대한 잔혹행위, 둘째, 인간의 존엄에 대한 외욕, 셋째, 인간의 교양에 대한 파괴라는 2가지 형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에서 그것은 전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정신대의 강제모집, 연행, 관리는 위 인도에 대한 죄의 요건 중 ‘노예적 혹사 및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enslavement and other inhumane acts)와 ‘전쟁의 수행으로서 또는 그것에 관련해 행해진 정치적, 인종적 이유에 근거한 박대행위’에 해당된다.

조선의 여성들은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하여 계획적, 조직적,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일본군인들의 ‘성병예방’, ‘강간예방’을 위해 ‘황군장병들에게 주어진 선물’ 이었으며 군용 특수위안소는 쾌락의 장소가 아닌 ‘위생적인 공중변소’로 이용되어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성과 민족이라는 이중학대를 받았으며 이는 인간존재에 대한 잔학행위이며 인간존엄에 대한 모독이고 인간의 교양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여성은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공중변소로 취급한 일본과 일본군의 정책은 여성학대의 극치이며 ‘인도죄’ 위반이다.

둘째, 정신대는 기본적 인권 즉, 정조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군대위안부는 외출도 할 수 없는 감시하에 있었고 좁은 방에 갇혀 매일 수십명의 병사의 성욕처리 상대가 되었으며 일본군의 퇴각시에는 그냥 내버려졌다.

일제는 군대위안부가 된 조선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고 생애에 치명적인 고통을 주고 성병을 감염시켜 건강을 빼앗고 패전하여 퇴각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어 수족이 부자유해졌을 때 한조각의 가치도 없는 소모품과 같이 말살했다.

여성의 정조는 생명, 신체의 자유와 동일 수준의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 일제는 조선여성을 강제징집하여 전장에 내보내 일군의 성적 희생물로 삼아 조선여성의 정조권, 신체의 자유,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

셋째, 정신대는 강제매춘금지에 대한 위반이다. 여성은 상품으로 이용하는 일, 특히 매춘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해 매매하는 일은 반인륜적 범죄로서 일찍부터 금지하고 있다.

- 1904년 '백인노에 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정'
 - 1910년 '백인 노예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 1921년 '부녀자 및 아동의 매매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 1933년 '성년 부녀자의 매매방지를 위한 국제'
 - 1949년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매착취의 방지를 위한 협약'
- 정신대는 일제가 침략 전쟁수행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강제로 처녀사냥을 한 대표적인 인신매매 범죄이며 강제매춘 사례이다.

III. 법률적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당사자 적격

강제연행된 군대위안부 본인과 그 가족, 유족들이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일본국'이다.

2.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1) 일본정부는 정신대, 군인, 군속 등의 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민법 제 724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加害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한국민법 786 ①, ②)

동아일보 1992. 2. 8자 보도에 의하면 지난 1. 27. 동경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한국인 징용피해자가 소속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피고회사측은 시효완성의 주장을 펴고 있다.

2) 그러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김찬규, 전계 논문)

유엔총회는 1968. 11. 28.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의 시효불적용에 대한 협약」을 채택(1970. 11. 11발효)하였고, 1974. 1. 25. 유럽이사회는 자체의 「인도에 대한 죄 및 전쟁범죄에의 시효불적용에 관한 유럽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서독의회는 1969년 7월 3일 전쟁범죄 및 인도에 관한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입법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일본이 진정으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를 배우치고 사죄한다면 독일처럼 스스로 시효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제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반면 피해국(국민)은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3) 또한 그동안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개입 내지 주도적 역할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그것은 민간인들이 한 일이기에 정부로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주도로 일이 자행됐다는 물증이 잇따라 발견되자 일본정부는 그 관련성을 시인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1991. 8. 27. 일본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무성 야나이 조약국장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양국간의 청구권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일본국내법적 의미로서 소멸시

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고, 1992년 1월 14일 미야자와 일본총리는 당시 일본권이 위안부 모집과 경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충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따라서 전쟁범죄에의 시효불적용의 원칙이 일본국내법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군대위안부 존재를 최초 시인한 시점, 빨라야 위 1991년 8월 27일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일본의 주장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위 미야자와 총리의 사과와 반성의 말로 인하여 일본정부는 일본 민법상(제 146조) 인정되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배상청구권의 소멸여부

1) 일본은 그간 조선인 군인, 군속, 군대위안부의 배상요구에 대하여 지난 1965년 한·일정부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 및 배상문제는 법적으로 모두 끝났다는 입장이다.

위 협정 제 2조 1항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그러나 한일협정 당시 정신대문제는 전혀 고려된 바 없었다. 일본정부는 당시 정신대 존재자체를 부인했었고 또 한국정부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었다. 위 한일협정은 군인, 군속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더욱이 당시 위 협정에 의해 받은 차관 5억불은 경제협력금의 명목이었지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개별배상금의 성격이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정신대 피해배상 문제는 위 한일협정 체결시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므로 위 협정 제 2조 제 1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국가의 배상청구권과 개인의 그것은 엄연히 별개이다. 전쟁책임을 묻는 데는 전쟁배상과 민간배상이 있으며 그 중 전쟁배상은 당시국 정부간의 협정을 통해 포기할 수 있으나 민간배상 청구권은 국가에 귀속될 수 없다.

국민주권주의가 헌법상의 원리로 천명되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 다카시마 심의관은 1991년 3월 일본국회 답변에서 1956년 일·소국교제개시 양국 공동성명에서 '서로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에 대하여 '일본이 소련에 대해 포기한 것은 국가 자체의 청구권이지 국민개인이 소련 또는 그 국민에게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여 한국인의 대일청구권 문제와는 전혀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4) 그러나 한일양국간 과거청산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자 일본은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91년 8월 27일 일본 외무성 야나기이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일청구권 협정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고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국회답변하였으며 미야자와 총리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가차원의 청구권은

마무리 됐고 다만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법원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4. 입증책임문제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존재 사실, 가해행위가 고의, 과실에 기하였다는 사실, 권리의 침해가 있는 사실, 가해행위와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정신대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정신대의 계획, 모집, 차출, 배분, 수송, 관리 등에 직접 관여하였고(민간업자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 각 과정에서 강제연행, 폭력사용, 납치, 공갈, 협박, 기만 등의 불법적 방법이 동원되어(자발적으로 돈벌려 간 것이 아니라라는 점) 강간, 강제추행, 강제노역, 폭행 등을 당하여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2) 그러나 현재 위와 같은 사실은 고사하고 실태파악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는 정부당국의 무관심과 무책임의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가 폐망시 총독부 관련 문서들을 모두 폐기하여 버렸고 피해자들도 수치와 분노 그리고 자포자기의 심정 등 때문에 오랫동안 역사의 빈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신대의 강제동원에 일왕이 직접 관여했다는 물증이 발견된 이상 보다 더 구체적인 강제동원의 실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일본측의 성실한 진상규명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한국정부도 국내자료의 수집과 발굴등 증거수집 노력 및 피해자들의 실태파악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앞서 본 일왕의 칙령이나 문건들 존재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모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재판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승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대 피해자의 '증언'은 법적으로는 그의 '주장'일 뿐이며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는 따로 존재하여야 한다.

4) 참고로 위 소송에서의 원고 김학순의 청구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 김학순은 1923년 중국 동북지방 길림성에서 태어났는데 탄생후 얼마 안있어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친척이 있는 평양으로 돌아와 보통학교에 4년까지 다녔다. 어머니는 가정부 등을 하였는데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김학순도 보통학교를 그만두고서 아이를 돌보거나 일을 거들어 주었다. 김태원이라는 사람의 양녀가 되어 14살부터 기생학교에 3년간 다녔으나 1939년 17세 봄에 '거기 가면 돈 벌 수 있다' 라며 김학순의 1세 연상의 동료(에미꼬)와 함께 양부에게 꼬임을 당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트럭을 타고 평양역에 가서 거기에서 군인 만이 탈 수 있는 군용열차에 3일동안 실려 있었다. 몇번이나 같아 타고 안동과 북경을 지난 것. 도착한 곳이 '북경', '작카현', '철벽진'이라는 것 밖에 몰랐다. '철벽진'에는 밤에 도착하였다. 작은 부락이었다. 양부와는 거기에서 헤어졌다. 김학순 일행은 중국인의 집의 장교에게 안내되어 방에 들어가자 자물쇠가 채워졌다. 그 때 비로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하자 '무슨 바보같은 이야기야!'라고 소리쳐 어떻게든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주위는 군인으로 가득하였다. 그 날 오전중에 장교가 왔다. 함께 온 에미꼬와도 떨어뜨려 놓고 '걱정하지 마라. 말하는 대로 해'라고 하며 '옷을 벗어'라고 명령했다. 폭력을 휘둘러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나 너무나 쓰디쓴 기억이었다. 다음날부터 매일, 적을 때에는 군인을 10명, 많을 때는 30명 정도 '상대'했다. 아침 8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병대가 왔다. 콘돔은 자신들이 가지고 왔다. 밤에는 장교를 상대했다. 병대는 아침부터 술을 먹고 노래부르는 자도 있었다. '토벌'을 위해 출진하기 전날의 병대는 홍분되어 있어 특히 난폭하였다. 조선인이라 해서 구타당하기도 하였다. 이들 군인들은 개와 같아 도저히 인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방안에서는 중국인이 남긴 중국옷과 일본군이 옛날에 입던 군복을 입혔다. 1주 내지 1달에 한번정도 군의가 와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폐병에 걸렸기 때문에 약을 여러가지 받았다. 606호라는 항생물질 주사도 맞았다. 김학순을 거기에서는 '아이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다른 4명의 한국여자는 함께 온 '에미꼬' 외에 가장 연장자인 '시즈베(22세)'와 미야꼬(19세)', '사다꼬(19세)'라는 이름이었다. 시즈에는 다른 방에서 따로 장교용으로서 방을 받았는데 나머지 4명은 방 하나를 거점으로 넷으로 나누어 거주했다. 식사는 군에서 쌀, 된장 등을 받아 5명이 자취하였다. 이 철벽진에 있던 일본군대는 약 300명 정도의 중대규모로 '北支'를 전전하였다. 철벽진에는 1개월 반 정도 있었으나 몇번인가 이동했다. 김학순 등도 함께 옮겨졌다. 가는 곳곳 중국인 마을에는 중국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항상 빈 집을 위안소로 정해 사용했다. 어느날 병대가 2 사람의 중국인을 데리고 와 모두의 앞에서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 묶어 일본칼로 목을 자르는 장면을 보게 하였다. 밀정이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였다.

김학순은 매일이 너무 괴로와 도망치려 하였으나 항상 주위에 일본군 부대가 있고 민간인과 접촉할 수도 없고 중국 지리도 잘 몰랐으며 또한 말도 통하지 않아 도망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해 가을 어느 날 밤 병대가 전쟁에 나가고 적을 때 한 사람의 한국인 남자가 방으로 몰래 들어와 자신은 한국인이므로 빨리 달아 나라고 하여 밤중에 몰래 도망칠 수 있었다. 그 한국인 남자는 조원찬이라 하며 우천상매가 직업이었다. 김학순은 이 남자를 따라 남경, 蘇州 그리고 상해로 도망했다. 상해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프랑스 조계안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전당포를 하면서 몸을 숨겨 해방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1942년에는 딸, 45년에는 아들을 낳았다. 46년 여름이 되어 중국에서 동포인 광복군과 마지막 배로 한국에 몰래 돌아왔다. 그러나 인천의 피난민 수용소에서 딸이 죽고 1953년 6. 25 전쟁중에 남편도 죽고 김학순은 행상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도 국민학교 4학년 때 물에 빠져 익사했다. 유일한 희망이 없어져 함께 죽으려 했으나 죽지도 못하고 한국 내를 전전하면서 술, 담배를 가까이 하는 생활을 보냈으나 10년 전부터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서울에서 가정부로 일했지만 현재 늙어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아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최소한 다음의 사실들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위 원고가 양부의 꼬임에 빠져 중국으로 간 사실, 그 양부가 일본군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사실, 강제로 일본군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강간당한 사실, 도망치지 못할 정도의 감시상태나 부대내 거주사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종군하게 된 사실 등.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누가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위

소송의 대리인도 소장 맨 마지막에 일본국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위와 같은 청구원인을 다루지 말고 '인락(認諾)'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락한다면 원고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해방된 지 47년이나 지난 현재 해방전 사실들을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 몇명이나 생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또 설사 그가 일본법정에서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다.

5. 재판기간문제

6. 소송비용문제

7. 일본측 소송대리인(변호사)선임문제

8. 위자료 청구금액문제

9. 대만출신 일본인 병사의 보상청구소송

1) 사건개요

1974년 모로타이섬의 한 구석에서 대만출신 일본군 군인 나카무라(中村鞠夫)씨가 발견되었다. (대만명 李光輝)

그는 그 때까지 일본의 폐방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대만출신이라는 이유로 일본정부로부터 고작 약 68,000엔을 받고 대만으로 보내겼는데 그 즈음에 발견된 원 일본인 군인인 오노다 요꼬이에게 지급된 보상과 비교할 때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다. 이를 계기로 대만출신 일본군 병사에 대한 보상실태를 파악해보니 전사자 유족 부상자들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한푼의 보상도 지급치 않았으며 전쟁중의 미지급 급여나 반강제적으로 예금시킨 군사우편저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1977년 유족과 부상자 대표 13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보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소송과정

원고를 변호인단은 군인, 군속이라는 국가와의 고용에 기초한 법률관계, 국가가 군인, 군속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위험을 방지할 의무, 국가의 손실 보상의무, 법앞에서의 평등을 주장하여 대만출신 군인, 군속들에게도 일본의 恩給法, 유족 연금법에 따른 보상을 구하였고 일본국은 대만과 외교관계가 없다는 점, 원고들이 현재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점, 보상할 경우 중국, 한국, 북한 등에의 영향, 재정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1982. 2. 제1심인 동경지방 재판소는 원고들에 대해 동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전쟁보상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고 하며 '보상금은 세금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은 대만인에게는 보상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1985. 8. 26. 제 2심인 동경 고등재판소는 '현실적으로 대만출신 일본군 병사들은 거의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본인과 비교해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여 거기에 전사 혹은 부상당한 날로부터 이미 4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

하고 있으므로 예견되는 외교적, 재정적, 법기술상의 곤란을 극복하여 시급히 이 불이익을 불식하여 국제신용을 높이는데 노력하는 것이 국정 관계자들에 대한 기대임을 특별히 부연한다'라고 하면서도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 뒤인 1988년 일본정부는 위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대만인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의금 지급법'을 제정하여 1인당 200만 엔씩의 조의금을 지급하였다.

IV. 맷으면서

역사적 진실을 재판을 통해 밝혀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더욱이 과거의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지 않고 그 피해보상을 외면해 온 일본에 대해 일본법에 따라 일본법정에서 재판하는 일은 사전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증거확보,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 그리고 국민들의 성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신대 배상청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국 일선 행정기관에서 정신대 피해 신고센타를 설치해 오는 6월 25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 이상의 진상규명이나 대일 협상자세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신대 배상청구 소송은 피해 당사자들의 의지와 관련단체들의 후원,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 그리고 일본정부의 성실한 자세가 전제되어야 그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다.

(* 이 글은 '92년 4월 22일 "정신대문제와 한일정부의 책임"이란 주제의 공청회시 발표되었던 내용이다.)

한국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에 대하여

深 順 任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

반만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임을 자부하던 우리 한민족이 일제에 의해 36년의 치욕사를 겪었습니다. 남자들은 끌려가 창씨 개명되어 750만 명 이상의(일본 대장성 보고자료 참조) 노예적 강제 인력수탈을 당했고 여성들은 정신대의 미명을 붙여 감언이설로 또는 인간사냥으로 납치, 강제로 끌고가 군대 위안부를 만들어 반인간적 행위로 일본군의 성적 처리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 수행 60% 이상의 물자수탈 및 내선일체란 감언으로 민족말살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황국신민화 시켜서 끌고간 100여 만명 이상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피압박 민족이요 전쟁공포의 가장 큰 피해국이었는데도, 종전후에는 일본의 간교로 오히려 전범국과 다름없는 명예를 쳐왔다는 점을 우리는 되새기고 싶습니다.

전후 우리민족은 연합국의 심판대에 서야 했고 우리 입장은 아무도 이해할려고도, 변명할 여지도 없이 BC급 전범자로 몰려 “23명이 망국의 한을 안고 사형을 당했으며” 148명이 BC급 전범자로 몰려 육살이와 처형을 당한 통한을 다시 한번 안게 하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이용한 후엔 전쟁책임까지 우리민족에게 지워서 전범자로 만들었고 그 후엔 국적 조항을 붙여 그들을 버렸고 희생자 모두를 외면 했습니다.

1952년 4월 28일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필리핀, 월남, 버마, 인도네시아 까지도 서명국으로 들어가 일본에 대한 전후 배상청구가 인정되었지만 한반도는 미국의 잘못된 견해로 서명국에도 빠져서 다만 일본국과의 영토분리에서 오는 양국의 청구권을 동시에 인정한 예로 1952년 (2월15일 제1차)부터 시작된 한·일 회담은 일본이 오히려 우리에게 청구권을 요구하는 적반하장격의 횡포와 자신들이 보우 은폐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우리에게 오히려 제시하라는 등, 결국 그에 밀려 1962년 11월 12일 김, 오히려 합의(메모설)로 정치적인 일괄타결 이후 2년반 거의 일본 요구와 입장에 맞춰 조약 문이 후속처리 성안되어 1965년 6월 22일 정식 한·일 기본조약은 체결되었지만 양국조약 체결문 어디에도 태평양전쟁 희생자 부문에 대한 피해 상황이나 또한 문제점등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무상 3억불(10년분할재공)과 유상 2억불(년 3.5%이자로 7년거치 20년 상환으로 일본에 다시 갚음)로 일본은 큰 선심이나 쓴듯이 자국의회에선 독립출하금 또는 경제 협력금이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그 해 12월 “국내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로써 한국정부(국민포함)는 처음이자 최종적으로 대일재산 및 청구권이 소멸 한다”는 일방적 후속 처리법을 만들어 마치 적법인양 일본은 지금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법은 물론 거의가 우리글을 의식한 일본의 기발한 수법으로 한국의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의 권익과 인권을 일방적으로 침해내지 박탈시키려는 음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야 어떠하든 우리 태평양 전쟁 희생자 모두는

한·일 양국의 일방적 정치타결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외교권은 자국민을 외국으로부터 권리와 침해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것 이지 박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엄연히 국제법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일회담 체결은 가해국과 피해국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의 우호증진을 위한 조약체결이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권을 배제당한 즉 한국의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의 고통과 권한을 무시한 체결이기 때문에 우리 피해 당사자들은 양국 정부의 우리희생자 부문 체결을 다음 몇가지를 내세워 원인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첫째. 한일회담 체결 당시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한·일 양국이 거론하고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사전 통보 없었음)

1. 가해자가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할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 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 삼자와의 해결은 그게 국가라고 해도 인정 받을 수 없다. (양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박탈시킬 수 없음이 국제법에도 명시됨)

2. 우리 희생자들은 「히로히토(일본천황)」가 「황국시민」으로 끌고 갔으며 아직 일본의 헌법 제 1조에는 「천황은 국가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책임은, 유효하며 오늘날 한국정부를 개입시켜 개개인의 피해를 「본인들 의사 반영없이」, 정치적 대리 역할은 인정될 수 없다. 1990.5.24 노태우 대통령 방일 때 45년만에 처음으로 강제연행자 명단 공개 요청후, 이제 90,804명(91. 3. 5) 명단이 오면서 이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

둘째. 한·일 회담 당시엔 사망자 21,919명과 유해 2,329주로 이루어졌다. 가해자의 속임수로 이루어진 어떤 조약도 그 전모가 들어날 때는 언제라도 「원인무효」다. 즉 일본은 군인만 240만명 이상 사망자라고 했는데 한인 희생자들이 그 속에 창씨 개명되어 1990. 4. 20일까지 명단 분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유족회 확인)

그렇다면 간단한 추정으로도 몇십만명(군인, 군속만) 희생자가 되는데(노무자, 정신대 제외) 가해자의 거짓자료 제시로 이루어진 체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인무효」다.

셋째, 가해자가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축소하면 하나의 위로행위다. 그 위로행위로는 「정신적 위로행위」와 「물질적 위로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희생자들은 아직 공식사죄 마저 받지 못한 처지며 유해발굴 송환은 아예 빠져 있는 상태로 정신적 위로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치민다. 또한 무상 3억으로 36년의 수탈피해 및 희생자들의 물질적 위로행위까지 끌났다는 억지는 오히려 희생자들을 우롱하려는 처사로 민족적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도 희생자들의 용어리진 한을 풀기 위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 진신원(인간적인) 위로 행위가 따르지 않고는 희생자들의 문제해결은 결코없은 것

이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인간적으로 또는 도덕에 기준되서라도 우리의 고통이 실질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할 뿐,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육중한 걸치례로 명분만을 중시하는 법이라면 그 법을 지킬 하등의 가치를 우리는 느끼지 않는다.

한·일 회담의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희생자들 관련부문에 대한 것이

‘원인무효’임을 단호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일본에게 희생자들에게 직접 공식사죄할 것을 먼저 원합니다.

- 공식사죄 문제

그동안 히로히토의 “불행했던 과거문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한 아키히토의 “통석의 염” 등은 양국 정부간의 정치적인 말장난으로 또 우리 정부도 사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해도 우리 희생 당사자들은 “사죄에 대한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족회 측 요구

1. 일본 정부와 아키히토 일왕은 우리 희생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직접 공식사죄할 것.

2. 공식사죄란 반드시 모든 책임문제 해결이 뒤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희생자들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형식적으로 구사하는 말장난은 거부한다.

3.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문제해결 중 “정신적 위로행위의하나인 진실된 공식사죄”는 꼭 이루어져 원흔들과 희생자들의 한을 품고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는 즉각 정치적인 실천에 옮겨 최선을 다할 것.

- 생사확인 문제

아직도 사망신고도 못하고 호적에 살아있는 상태임.

- 명단공개문제

일본정부는 사망자(군인, 군속) 21,919명 중 71년 말경에 21,709명 명단 인수 후 1991년 3월에 90,804명의 정용자 명단을 한국에 인수해 준것뿐임.

- 242,341명(군인, 군속)의 명단 현재 작업중(91. 12. 7 후생성 발표)

* 태평양 전쟁희생자 유족회는 사망자와 강제징용자(기업별) 명단 15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생.사 확인신청 및 명단 확인 열람 가능

- 유해송환 문제

종전후 일본정부의 공식보관(후생성) 유해(남.북한) 2,329구 중 1970년 7월 1일 “1구” 송환부터 8차에 걸쳐서 1188위(1984년 4월 현재)가 송환되고 현재 1140위가 (남한 708구) 남아있음(1990. 4. 27 후생성서 본 유족회 확인)

보상문제

우리 정부는 태평양전쟁희생자 직계 가족(처, 자식, 부모, 조부모) 8,552명에게 1인당(사망자) 30만원씩 수령시킨 적이 있음(1975. 7. 1 - 1977. 6. 30)

일本国은 자국민 일본유족 구군인 유족은급법 1조 5,960억 엔 전몰자 유족연금등(2,767억 엔) 전상병자의료 등(6억 엔) 원폭의료 등(1,200억엔) 기타전쟁희생자 원호(2억 엔) 등 연간 약 2조엔의 예산을 쓰고 있음

- 전후처리문제

독일 : 1. 교과서에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명기(폐전후 즉각 헌법개정).
2. 50년에 제정한 ‘전쟁희생자 원호법’에 국적 조항 없음.

3. 서독의 대기업 등이 유대인 노동자 1만 4천여 명에게 7천 6백만 마르크(현재 일본 엔화 51억 엔 정도) 지급 등.

서독국가: 52년에 34억 마르크를 이스라엘 정부와 유대인 회의에 국가배상으로 지급.

개인 : 연방 변제법을 제정, 유대인 재산 및 사망자 유족들에 3조 1백 35억 마르크를 개개인이 강탈한 것을 변제하도록 함

* 개인에 대한 보상, 국가에 대한 배상, 개개인 강탈 재산에 대한 변제 등을 이행함.

이탈리아 : 전쟁희생자 원호 관계법에 국적 조항없이 피해자 전원에게 실시함

일본 : 1. 전쟁기간과 식민통치기간 때 저지른 위법행위를 인정 않고, 모든 것을 합법화 시키려고 안간힘.

2. 1952. 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후 “국적 조항”을 불허 자국민만 원호법 및 은근법에 의한 혜택을 실시함

* 전후 2차 대전 전범국 중에도 가장 기만적 행위로 “전후 처리회피”하고 세계 사상 유례없는 비인도적 처사로 한국인 희생자들의 인권침해

- 일본정부는

1. 미국으로부터 일본계인 피해배상을 위해 적극 추진, 결실 1988년 미국은 1942년 당시 미국 거주 일본계인들의 약 3년 반 정도 강제이주, 억류한 피해로 “시민적 자유법”을 성립

- 공식사죄와 더불어 약 6만인에게 “1인당 2만불” 씨 배상고 복지기금으로 3억불을 합쳐 15억불을 배상지불토록 함. (1990. 4월에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당시의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있었음-본 유족회에서 방일 때 확인)

2. 대만인 2만 5천 8백 58명에게 1인당 2백만엔씩 지급(87년도 9월 특별법 제정)

1977. 8. 13 대만인 전몰자 유족 13명이 대일 배상청구소송을 동경지방 재판소에 제소(1.2심에서 모두 패소)

당시 일본 법원은 국가 배상책임은 2차 대전후 만들어진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전쟁전 국적을 상실한 대만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

- 일본의 양심적 변호사와 교수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결국 재판에선 겼으나 이 소송을 계기로 대만인 전몰자 유족 혹은 전상병자들에게 조위금 지급법률이 제정돼 1인당 200만엔(한번의 교부국체) 씩의 조위금을 2만 5천 8백 58명에게 3억 8천 9백만 달러(1990년도

- 유족회측 요구

1. 일본은 하루빨리 한국인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제 관행대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우리 정부와 국회는 자국 국민의 타국으로 부터의 권리옹호의 책임을 절감하고 가해국 일본으로부터 희생자 개개인에게 국제 관행에 따른 배상실행을 위해 최대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
이를 위해 우리는 이미 1990년 10월 29일 22명(군인, 군속, 유족)을 공식사죄와 배상지불의무의 확인 소송을 한적 있음
- 1991년 12월 6일 35명(군인, 군속, 군대위안부)은 공식사죄와 1인당 2천만엔의 배상도 아울러 청구(동경지방재판소)함.
- 1992년 4월 13일 6명의 군대위안부들을 (정신대대책협의회) 추가로 본 재판소에 제소하여 (배상금 동일) 우선 41명의 원고는 1992. 6. 1일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임.

* 징용 노무자 재판은 각 기업별 실태조사 재판 준비중

끝으로 우리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이 바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일방적 형식에 그친, 65년 한·일 회담을 원점으로 돌리고 수십만의 고귀한 생명의 자취를 사실대로그 전모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여 왜곡된 악국 인력수탈사를 바로 잡아 진실을 정립하여 두번 다시 인권유린의 불행을 막아야 하며 처절한 삶으로 일생을 치욕과 고통으로 빼앗긴, 역사의 산증인들의 한을 풀게 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남은 여생을 보람으로 편히 안주할 수 있는 생의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한·일 양국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끝.

(* 이 글은 지난 '92년 4월 22일 정대협 주최로 "정신대문제와 한일정부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공청회 때 발표된 내용이다.)

1991년 12월 13일
민주당 이수인

정신대문제의 상징적 성격

정신대 문제의 성격은 두가지로 암축된다. 첫째, 그 상징성의 추상적 측면은 일제가 국가권력의 차원에서 우리겨레의 여성들을 육체적으로 파괴함으로써 그들은 물론 우리 겨레 전체를 정신적으로 파괴한 데 있다. 둘째, 그 상징성의 현실적 측면은 오늘날 일본의 국가권력이 정신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일체의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오늘날 까지도 우리겨레를 파괴한다는 데 있다.

1. 피해보상의 가장 큰 장애물 '한일협정' 재해석, 재검토 문제

1) 정당한 일제 식민지 피해보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한일협정이다. 정부는 여지껏 1965년 한일간의 청구권 협정에서 양국 및 양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하고(제 2조 1항) 앞으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제2조 3항)"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밝혀라.

2) 이 조항을 금과옥조로 삼아 피해배상 문제의 불가능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제법학자 서울대 백충현 교수의 논문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 불이행, 재일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 사할린 동포 등의 미귀환 상태로 방치, 전쟁 수행목적에 강제동원된 한인징용자, 정신대, 학병 등에 대한 각종 보상거부, 미불임금의 반환거부, 원폭 피해자에 대한 치료배제, 문화재의 반환회피 등으로 8.15 뒤 46년, 한일협정 뒤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해결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관은 이 국제법 학자의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3) 정부의 주장은 청구권 협정을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적으로 재일 한국인, 사할린거주 한국인, 그 외의 지역에 징용되어 귀환하지 못한 자는 이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물적으로 사할린 피징용 한인의 귀환문제와 같은 비재산적 의무도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한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라.

4)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은 인적, 물적 대상의 제한요소 뿐만 아니라 지역적 제한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청구권의 대상이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실제로 미치는 지역적 한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조·일수교 협상에서 북한은 새롭게 피해보상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일본에 대한 배상요구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라.

5) 일제 징용자의 보상권과 관련하여 일본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면 이것은 일괄타결 방식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상대상의 존재 인정과 보상책임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일괄타결을 위한 보상 산정의 근거로서의 명단 제시는 물론, 숫자마저 파악하지 않고 자료망실을 구실로 청구권 대상자료의 은폐에 주력했다. 이것으로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보상 문제가 종결되었다는 주장의 '전제' 자체가 부정된다. 따라서 '피칭용자 보상권'은 1965년의 청구권 협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6) 특히 지금 20여 만명의 강제징용자 명부가 확인되고 70-200만 명의 징용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 지금, '사정변경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는 일본과 제 2의 협정을 체결해야 하지 않는가.

7) 사할린 피징용 한인에게는 전후 일본에서는 물론 한일협정의 협상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일본인 귀환자에게 부여한 것과 동일한 보상과 식민지 지배와 미귀환에 따른 보상까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라.

8) 한일협정에서 한국정부의 의도가 첫째, 피징용자의 개인적인 피해보상 청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이었으면, 앞으로 피해보상이 일본의 국내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되거나 새로운 한일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둘째, 한일정부 차원의 공통된 해석이 해결된 청구권에 포함되었다는 것일 때에는 그 보상 책임은 당연히 한국정부에 귀속될 것이며 개인의 피해보상은 어떻게든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2. 일제 피해보상문제 미해결의 직접적 책임은 한국정부

1) 일제피해 보상문제가 미해결의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한국정부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피해자 및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1945년 종전 뒤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2) 외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18일 상임위 답변에서 "추가보상문제 등의 문제는 국제법, 외교관계 등을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가적 조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가 검토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밝혀라.

3) 독일의 전후배상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프랑스 등의 정부와 유대인 단체의 압력에 의해 주동되었고, 대안의 경우도 대안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1988년 제정된 '대안 주민 유족 조위금 지급법'에 따라 3만 명이 1인당 2백만 엔씩 지급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일제 피해보상에 대한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4) (서울대 법대 백충현 교수에 의하면) 국제법상으로 식민지 지배나 전쟁 등과 같은 경우 배상, 보상문제는 국가간의 '일괄타결'의 방식이 도입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본국이 가해국에 대해 자국민이 침해한 권리구제를 주장하지 않거

나 소극적일 때에는 가해국은 국제적 교섭의무를 지지 않게 되며, 국내적으로도 국제법의 제약에서 해방되는 것이 상례이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한인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외교적 보호권' 행사 경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인권침해'이자, 전형적인 '피해자 본국의 책임방기'가 아닌가. 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5) 일본 사회당 다나베 위원장은 지난 8일 「사죄와 보상, 그리고 결의」라는 연설에서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문제는 남아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피해국인 한국의 장관은 지난 10월 "보상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 체결로 외교문제로는 일단락 되었다"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가 일제 피해보상 문제를 미해결로 남아있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6) 15 내지 20만 명에 달했던 정신대는 일제의 우리민족에 대한 민족적 착취의 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독립기념관 내의 위령비 건립 건의에 대해 '건립부지 부족 및 조경상의 문제로 추가건립을 불허하고 위령비 건립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시행정적인 통일염원탑의 독립기념관에 건립을 추진하는 정부가 위령비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반민족적인 행위가 아닌가.

3. 가해자 일본에 대해 강력한 피해보상 요구

1) 전후 처리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일부로 보아 전쟁 당사자에서 제외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일본에서 독립한 외국의 범주에 두어 일체의 전후보상 등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했다. 강제동원 될 때에는 일본인의 자격으로 징용되어 희생되었어도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일본국적을 박탈하여 제외시키는 이중적 불법행위가 국적을 중심으로 자행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2) 독일은 50년에 제정한 「전쟁희생자 원호법」에 따라 원호를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적조항이 없다.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 군인, 군속과 일반 희생자를 전쟁 희생자로 규정해 원호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적조항이 없다. 그러나 일본은 전후 제정한 17개 원호관계법 중 2개의 원폭희생자 원호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적조항을 두어 한국인에 대한 원호조치를 교묘히 배제시켰다. 이러한 한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일본에 대해 어떤 개선조치를 촉구했는지 밝혀라.

3)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의료 및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지 밝혀라. 그리고 이것과 일본의 원폭 의료법과 원호법에 따른 일본인 피폭자의 보상과 비교하라. 일본국적 항에서 당한 원폭피해에 대한 보상이 일본과 한국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피폭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 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라.

4) 한인계 전범에 대한 피해보상 거부는 일본 법치에 의한 권리남용의 본보기이다. 전범으로서의 국제적 책임은 일본인의 자격으로 지게 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적을 박탈하여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호제도의 법적 사유와도 어긋난다. 일본의 이러한 잘못된 원호법을 개정하도록 정부는 강력히 촉구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라.

5) 현재 금액으로 무려 2천 9백억 엔(한화 1조 5천억 원)이 공탁된 채 남아 있는 징용 한국인의 임금에 대해 일본정부는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않고, 국고에 환수토록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인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 국가에 의한 개인 권리의 구제에 있음이 분명하다면 정부는 미불임금의 반환청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라.

6) 정신대에 대해 미 스텐퍼드 대에서 발견된 미군 작성 공문서, 당시 노무보국회 동원부장이었던 요시다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 김학순 씨의 증언 등 물적, 인적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방장관 가토는 "정신대에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라.

7) 일본정부가 자기의 역사적 죄과를 은폐하기 위해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지금,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신대에 일본정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의 발굴에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라. 그리고 태평양 전쟁 희생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요청 소송에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밝혀라.

8) 일본은 진주만 공격직후에 발생한 미국의 일본인 강제수용을 문제삼아 보상투쟁을 벌였고, 이에 따라 미국은 1988년 '일계 미국인 전시 강제수용 보상법'을 제정, 전시중 부당한 취급을 당한 일본인들에게 정식 사과하고 생존자 6만 명에 대해 1인당 2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식민지 지배에 따른 가해에는 보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입은 피해에는 악착같이 보상을 받는 일본의 이중성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보상문제가 '피해국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가해국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가.

9) 독일의 경우 전쟁 후 1991년 1월 1일 현재까지 총 864억 2,700만 마르크(약 39조 7,500억 원, 525억 9,000만 불)를 보상했고, 통일독일이 앞으로 40년간, 다시 말해 2030년까지 지불할 보상액은 333억 6,300만 마르크(약 15조 3,470억 원, 203억 불)에 달한다. 그리고 공기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에 의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졌다. 피해보상에 대한 독일의 자세와 비교할 때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는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 일본인의 국민성에 기인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한국의 대일 의존적인 굴욕외교에 기인하는가. 장관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라.

10) 독일은 이러한 피해보상과 사죄를 통해 전세계에 호감을 사고 있고 유럽

공동체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기 때문에 관계국들과 역사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계를 받고 있다. 일본을 위해서,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일본에 사죄와 보상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4. 대처방안

일제 침략시기의 피해보상 문제는 청구권 협정의 문안처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도덕적으로도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한일 신시대'는 일제 피해보상의 해결없이는 결코 도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과 일본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과거처럼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정부라면 우리 국민의 가장 심각한 역사적, 국제적, 집단적 인권침해인 일제피해 보상문제에 대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1) 첫째, 피해보상을 위한 첫걸음은 진상의 규명이다. 피징용자, 정신대, 사할린 피징용자, 사망자와 그 유해들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만의 경우 일찌기 희생자 실태조사와 유해수습을 끝냈고, 재일 조총련도 징용자 명단을 찾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유독 한국정부만 이러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둘째, 24만 2천여 명의 일제 징집 한국인의 명단을 비롯하여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일제징집 한국인의 명단을 비롯하여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일제 피해자 명부를 즉시 인도, 공개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정부가 건네받은 9만 8백 4명의 징용자 명부를 즉각 공개하라. 이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적 권리구제의 길을 막는 불법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가 아닌가.

3) 세째, 일제 피해보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일협정 주역과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각계의 인사들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정부 내에 일제 피해보상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그리고 국회에 '일제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관계자가 포함되는 '전국민적 대책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4) 네째, 독일 연방의회에 '나찌스 부정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일본사회당이 지난 8일 시민운동과 공동으로 '전후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에 일본정부가 솔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한일간, 또는 일제의 피해를 받은 전아시아국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제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국제의원연맹(IPL)이나 한일의원연맹은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5)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피해보상의 원칙적 경향은 북한과 일제 식민지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첫째, 남

정신대 문제의 실상

정진성(정신대연구회 회장)

북한의 분단이 일제의 침략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으므로 공동의 적에 대처했던 지난날 한국 민족주의의 전통을 되살리고 둘째, 오늘날 피해보상의 공동대처로써 강화할 수 있는 민족적 동질성의 재확인을 통해 남북 통일의 기운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6) 한일 선린관계의 장래는 역사적 부정을 호도하거나 자국민의 침해된 권리 를 감수하면서 전개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피해배상과 보상은 개인의 권리”이며, 이 권리가 구제될 때까지 가해자인 일본과 권리구제를 완결하지 못한 한국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의 ‘의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마무리 질문〉

* 지난 4반세기 동안 대일 무역적자의 총액이 619억 4천 8백만불인데, 같은 기간동안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의 총액은 300억불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논리적 가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기간에 대일 무역적자 총액이 무역 총적자의 무려 205.9%나 되며, 올해에도 10월말 현재 전체 무역적자는 100억 9천 8백만 불인데, 그 중 대일 적자는 73억 4천 9백만 불로서 총적자의 72.8%에 달하고 있다. 이 사실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래 한국경제사는 바로 대일종속의 역사라는 평가가 있더라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관은 동의할 수 있는가.

* 더욱 놀라운 현실은 「경제적 식민지화 경향」이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66년부터 1982년까지 17년 동안 대일무역 적자 총액은 239억 1천 8백만 불이며 같은 기간 무역적자 총액 337억 5천 2백만 불의 70.9%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일본의 무역흑자 총액은 273억 7천만 불인데, 한국과의 무역흑자 총액은 239억 불에 이른다. 일본의 이 대한 무역흑자 총액은 82년 말 현재 일본의 ‘금 및 외화 준비고’ 232억 6천 2백만 불을 넘는 수준이며 또 당시 일본의 대한 무역 비중은 총액의 7%(대한 수출 4.7%, 수입 2.4%) 정도 밖에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 무역흑자 비중의 87.4%를 차지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의 열매가 송두리째 일본인에게 바쳐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러한 한일 양국간 경제적 무역 불평등의 현실을 볼 때 첫째, 한일협정은 원천적으로 부정된다는 것. 둘째, 이 막대한 일본의 무역흑자 만으로도 정신대를 비롯한 일제 식민지 지배의 피해를 배상하고도 남는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응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신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장관은 이런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제시기 정신대문제는 일본군의 고의적 자료폐기와 당사자들이 경험을 숨기는 경향 등의 특수성 및 일제시기 민중의 수탈사에 대한 전반적 연구 부족으로 인해 오랫동안 역사에 묻혀있었다. 몇몇 연구자의 외로운 연구로 이어져온 이 문제가 1980년대후반 교회여성연합회 등의 여성단체에 의해 사회운동화되고 1990년 한국정신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으로 약칭)의 발족으로 본격화되었다. 작년부터 일본, 미국 등에서 정신대 관련 자료들이 속속 발견되어 일본정부는 마침내 이 문제에 일본군이 개입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정신대 피해 당사자와 일본 내의 가해자들이 다수 증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과 조사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 문제는 연구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그 역사적 사실은 모든 점에서 명확히 규정되기 힘든 상태에 있다.

정신대의 개념규정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신대와 종군위안부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약간의 개념규정을 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정신대는 당시 조선 내 뿐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행해졌고, 남자, 여자를 모두 포함하였던 것으로 근로 정신대를 비롯하여 인술정신대, 보도정신대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 조선에서는 1940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전시에 매우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여성의 동원과 관련해서는 근로정신대와 종군위안부가 중요하다. 여자정신근로대는 1944년 8월에 여자정신근로령이 발포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관의 지도알선이라는 방식으로 동원되어 왔으며, 이 령이 발포된 후에도 이것이 규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여성이 조선에는 극히 적었으므로 조선총독부는 관의 지도알선의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동원을 계속할 방침을 표명했다. (國民總力朝鮮聯盟, 1944)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동원은 조선에는 없었으며, 관알선방식에 임의적 연행이 많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종군위안부는 당시 일본의 군자료에는 위안부, 종업부 등으로 표기된 것이 나타나며, 한국 내에서는 그 개념이 명확히 사용되지 않았다. ‘종군’이 자발성의 의미를 내포한다 하여 ‘군대위안부’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하는 주장(김일면 등)도 있는 것으로 보아 ‘종군위안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 개념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한편 1943년 山口현노무보국회에 대해 황국위문조선인 여자정신대 200명을 동원하도록 명령했다고 한 吉田清治의 보고(요시다 세이지, 1989:105)나, 만주국 경장 모집, 여자정신대 모집 등의 광고가 2차대전 당시 면사무소나 주재소 앞 포스터에 붙어 있었다는 증언(김홍종, 조선일보, 1992.7.8) 등으로 보아 종군위안부도 정신대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다시 위안부로 강제된 경우도 前위안부의 증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당시 종군위안부 모집이 근로(취업)를 명목으로 한 사기적 방법에 의한 것이 많았으므로 이 두 범주는 당시 사람들에게 정신대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인식되었던 듯하다. 이 개념규정의 문제는 보다 면밀한 역사적 고찰을 요하는 것이다.

최근 한일 간에 중요한 잇슈로 논의되고, 운동의 촛점이 되고 있는 것은 종군위안부 문제이므로 이글은 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근로정신대 등 다른 문

제에도 민족적 관심이 주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위안부

종군위안부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기업, 탄광 등의 노무자를 위한 위안부의 존재를 간략히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들 위안부의 존재는 일본 내에서 일찍부터 발견된다. 가장 처음의 집단적 형태는 1920년대 초에 北海道 개발 時, 조선인 노동자의 집단이주와 관련하여 그들을 위한 조선인위안부가 연행되었던 것이다. (하꼬다테 신문, 1923. 12. 18. 윤정옥, 1992(b):22)

이러한 노무자(주로 조선인)를 위한 소위 기업위안부의 존재는 1930년대 말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연행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전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北海道의 경우, 1939년부터 탄광내에 전시하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안소 설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朝日新聞北海道内13版, 1992. 3. 13.) 이것은 주로 강제연행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것이었으나 일본인도 이를 이용했다 한다. (朝日新聞北海道内13版, 1992. 3. 15.) 이렇게 전시에 노무관리를 위해 세워진 위안소는 군대내의 위안소와 관리, 경영 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위안소의 설치는 노동자의 성문제를 고려한 탄광회사의 발상으로 보이나(朝日新聞北海道内13版, 1992. 3. 16.), 개설에는 도청의 허가가 필요했으며 그 과정에 경찰과도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있다. (小新聞, 1939. 10. 13. 朝日新聞北海道内13版, 1992. 3. 15.) 위안소는 주로 탄광내 요리점의 형태로 신설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였는데, 회사가 건물, 기타설비를 제공하고 경영은 매춘업자가 맡았다. 탄광병원과 경찰의사가 위안부를 위생검사하고, 예방구(콘돔등)의 제공과 위생지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朝日新聞北海道内13版, 1992. 3. 16.) 노무자 500명에 요리점 하나를 개설하고 여기에 3명정도의 위안부를 둔 것이 대체적 비율이었다고 한다. (小新聞, 1940. 1. 12.) 여기에 고용된 조선인 위안부는 대개 조선에서 일본의 방적공장등에 취직된다는 말에 속아서 온 13-19세 여성으로서, 北海道 전역에 약 3000명이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朝日新聞北海道内13版, 1992. 3. 13. 15.)

탄광외에도 어선원을 상대로 다수의 위안부가 조선에서 연행되어 왔다는 기록이 있다. (北海道新聞, 1991. 12. 6.)

이 모든 위안소의 개설, 경영, 위안부의 모집이 일관된 일본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었는지, 어느 정도 정부가 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으며,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종군위안부의 형성

전시체제에서 군인을 위한 위안소가 일본군의 직접적인 관여에 의해서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많은 자료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 지난 6일(1992. 7. 6) 일본정부는 '군점령지 내의 일본군에 의해서 주민에 대하여 행해진 강간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치안회복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군인 개인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함과 동시에 조속히 위안설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38. 7. 13 「步兵第41連隊陳中日誌」)는 통첩과 '위안설비는 사기의 진흥, 군기의 유지, 범죄 및 성병의 예방 등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위안의 제설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40. 9. 19. 「陸密第1955號 軍紀振作對策」)는 자료를 제시하여, 위안소 설치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일본 내와 조선의 일본군대 속에도

광범하게 위안소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강간예방이나 점령지의 치안유지 보다 군인들의 성병예방이 보다 기본적인 동기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술할 바와 같이 위안부 대부분이 조선여성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선민족의 망국도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였다는 주장도 있다. (윤정옥, 1992(a):12) 이점에 관한 자료 발굴도 추후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위안소업자에게 군이 특별전매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던 사실이 발견되어, 군의 독자적 재원의 확보 목적으로 위안소 설치에 보다 적극적이 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1992. 4. 8. 參議院豫算委員會 議錄)

위안소 설립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정확한 명령계통은 밝혀지고 있지 않다. 일본군의 최고통수권자가 천황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매우 중대한 점이다.

종군위안부의 형성시기를 1937년으로 보는 견해(예컨대, 千田夏光와 鈴木裕子는 12월 낙경대학살 후, 김일면은 7월 중일전쟁의 결정 후, 윤정옥, 1992(a):8) 가 지금까지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종군위안부는 이미 1932년 만주의 일본군대에서 강간 및 성병 문제로 인하여 형성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임종국, 岡村寧次大將 (양미강, 1992:37)) 이 주장은 최근 정대협에 신고한 전위안부 중 1933년에 만주로 끌려갔다는 증언으로도 뒷받침된다. 지난 6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자료 중, 이미 1934년 상해에 해군위안소가 14개 있다는 보고(1935, 「外務省警察史 在上海總領事館」)와, 1936년에 상해의 해군위안소에서 해군의 협조, 단속이 심했고 매주 2회 陸戰隊員 및 경찰관의 입회 하에 위안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행했다(1936, 「外務省警察史 在上海總領事館」)고 하는 보고도 발견되었다. 이로 보아 종군위안부의 형성시기를 1930년대 초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군대의 위안소가 전체적으로 몇개이며 규모는 어떤지를 대한 체계적 파악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및 조선 내의 군대를 포함하여 만주, 중국, 베트남, 남양군도 등 전시 일본점령지 전역에 존재했으므로, 그 수는 상당하였으리라고 보여진다. 현재 위안부 수를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규모가 다각적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위안부의 연행방식

현재 한일간 종군위안부 문제에서 연행방식은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뚜렷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 조선에서 위안부의 모집이 강제 아니면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에 의했다는 것은 전위안부를 포함하여 당시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식과 같은 사실이나, 지난 6일 일본정부는 경찰청 등 6개 省, 府에서 연행방법에 관한 자료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현재로써 가장 강력한 증거는 1942년부터 패전까지 山口노무보국회에서 조선인 위안부의 동원을 담당했던 吉田清治의 증언이다. 그는 육군대본부로부터 트럭과 군인등을 제공받아 제주도에서 조선인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증언했다. (요시다 세이지, 1989) 지난 1월부터 정대협에 신고한 전위안부 중 심충면담을 한 30명의 경우, 40%정도가 군인이나 현병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증언했으며, 50%정도가 취업을 해준다는 속임에 의해서, 나머지가 자신도 모르게 포주에게 팔려간 경우, 취업 중 도망가다가 잡힌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위안부의 모집과 수송은 군인이 직접하거나 군의 도움을 받은 민간인이 행하였다. 일본군은 위안부 동원시의 파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군의 위신을 보지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위안부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의 인선을 적절히 행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통첩(1938. 3. 4. 「支受大日記密」)을 발표하기도 했

다.

강제연행에의 군 및 경찰의 개입을 확증하는 자료의 발굴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위안부의 성격

많은 자료와 전위안부들의 증언은 전장의 위안부 대부분이 조선인 여성이었고, 일본인이 다소 있었고, 대만, 중국, 필리핀인 등도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일본인의 경우, 조선여성에 비하여 나이가 많고 일본에서 화류업에 종사하던 여성이었던데 비해 조선여성은 나이가 어리고 초심자가 대부분이었다는 당시 위안부를 겸진한 군의관의 증언으로 보아(麻生徹男, 1939) 일본에서의 동원은 직업매춘여성에 국한했던 것에 비해, 조선여성의 동원은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위안부들의 증언에서 대부분이 어린 시절 가정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으로 볼 때, 강제 및 사기방식의 위안부 연행이 주로 하류층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안소의 상황

위안소는 군대 내에서 군이 직접 경영한 것과 군에서 측조하고, 허가와 통제를 가하지만 민간업자에게 경영을 위임한 경우로 나뉜다. 위안소 관계자에게는 군에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며 위안소 관계로 도항할 경우 군의 증명서에 의해 하도록 하였다.(1939. 4. 10. 「支那事變に際し那人の渡支制限並取締關係雜件 那人渡支取締に關する拓務省報告」, 등)

그러나 위안소가 따로 설립되지 않은 채, 위안부들이 개별적으로 주로 계급이 높은 군인들을 상대한 경우도 전위안부의 증언에서 발견된다. 이 경우에 위안부들은 빨래, 청소, 취사, 간호보조 등 군대잡부의 역할도 같이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군위안소 설립의 초기 단계인 1930년대 초반에 만주 등지에서 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년대 후반이후에도 군대잡부가 사실상의 위안부역도 함께 한 경우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안소는 군대막사나 점령지의 기존의 건물에 조그만 칸막이 방을 만들어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군대의 이동에 따라 함께 이동하였다.

위안소는 군에서 만든 위안소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 규정은 군인의 계급별 위안소 사용시간, 한번의 사용시간, 이용자격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군인들의 성병방지를 위한 위생관리이다. 위안소 이용시 피임구를 사용할 것과 위안부에 대하여 군의 등이 정기적으로(주2회에서 旬1회까지 위안소마다 달랐다.) 성병검사를 행하고, 건강치 못한 경우 치료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위안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방구를 사용치 않은 군인들이 많았으며,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검진이 있던 경우에도 위안부 생활 중 성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생했던 경험을 대부분 말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하루에 3-40명을 상대했고 주말에는 더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겪은 경우도 다수 보고되었다.

보수는 상대군인으로부터 매번 군에서 지급된 군표로 받았고, 그것의 화폐가 격은 군인의 계급에 따라 달랐다. 이 군표는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경우 해방후 휴지조각으로 되어버렸으며, 저금을 한 경우에도 찾지 못했다. 간혹 돈으로 받은

경우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 상당한 저금이 가능했던 곳도 있으나(버마가 그대표적 지역이다.) 대부분은 거의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한다. 종군위안부의 군사우편저금은 현재 중요한 잇슈 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1945년 10월 이후 일본 우편국은 지불제한을 시행했으므로 그때 찾지 못한 전위안부들의 저금에 대한 환불이 최근 구체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다.(1992. 4. 8. 參議院豫算委員會議錄 제13호 참조)

귀향과 그후의 생활

위안부들의 귀환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으나, 상당히 낮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상당수가 위안소에서 또는 이동 중에 죽었다는 보고가 있다. 일본군은 패전 후, 위안부를 이동시킨 경우는 드물고, 유기하거나 심한 경우 사살하고 떠났다고 한다. 종전 후, 미군에 의해 점령되면서 수용소에 있다가 귀향한 경우도 많다.

정대협에 신고한 전위안부들 대부분이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했다가도 실패하여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은 물론이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은 증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귀향 후 생활이 어려웠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위안부 생활에 대한 가족을 포함한 주위의 편견, 자신의 건강 및 심리적 상황 때문인 것이다.

정대협의 활동으로 1991년부터 신고한 전위안부 할머니들이 1992년 5월 2일 무궁화자매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대협과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으며, 정대협 주최로 수요일마다 하는 일본대사관앞 시위에도 참여하고 있다.

〈참 고 자 료〉

- 김정면, 임종국 옮김, 1990, 「데이신파이」 일월서각
山河英愛, 1992, 「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센다가꼬오, 이송희 옮김, 1991, 「종군위안부」 백서방
양미강, 1992, "정신대에 관한 역사적 고찰"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
요시다세이지, 현대사연구실 옮김, 1989, 「나는 조선사를 이렇게 잡아갔다」
청계연구소
윤정옥, 1992(a), "정신대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문제자료집 1」
_____. 1992(b), "정신대 원흔 서린 발자취 취재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문제자료집」
정진성, 1992, "천황제, 군국주의, 여성"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
鈴木裕子, 1991, 「朝鮮人從軍慰安婦」 岩波ブックエット
麻生徹男, 1939, 「花柳病の極的豫防法」
國民總力朝鮮聯盟, 1944, 「國民徵用解説」
1938. 7. 13. 軍人軍隊の對住民行爲に關する注意の件 「歩兵第41連隊陣中日誌」

1940. 9. 19. 支那事變の経験より觀たる軍紀振作對策「陸密第1955號 軍紀振作對策」
1938. 3. 4. 軍慰安所從業婦等の募集に關する件「支受大日記密」
1935. 昭和10年在上海總領事館警察事務狀況 同警察署長報告摘錄「外務省警察史
在上海總領事館」
1936. 昭和11年中に於ける在留那人特殊婦女の狀況及其の取締(在上海總領事館警
察署沿革誌に依る)「外務省警察史 在上海總領事館」
1939. 4. 10. 4. 24. 外. 渡支取締方の件「支那事變に際し那人の渡支制限並取締に關
係雜件 那人渡支取締に關する拓務省報告」
1992. 3. 21. 4. 8. 參議院 豫算委員會議錄

조선일보

北海道新聞

朝日新聞 北海道内13版

小 新聞

천황제, 군국주의, 여성

정진성(정신대연구회 회장)

한국이 일본에 문명을 전달했던 근대 이전까지의 역사가 뒤바뀌어, 한국은 일본에 식민지적 병합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봉건시기에 생산력과 군사력의 발전을 이루고 서양의 자본주의 문명에 일찌기 적응한 위에, 세계자본주의의 성립과정과 열강들의 세력균형의 상황 속에서 유리한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明治維新으로부터 확립해온 천황제를 강화시키며 군국주의의 방향으로 사회를 몰았다.

이후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자생적 근대화의 길을 저지, 왜곡시킨 식민지화와 이를 더욱 혼돈으로 몰아간 일본의 군국주의에서 기인한 바 크다. 일제시기 종군위안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순이 침예하게 결집되어 나타난 문제인 것이다. 특히 이것은 일본사회에 뿐만 아니라 존재했던, 그리고 천황제와 군국주의 하에서 더욱 강화, 이용된 여성비하의 구조가 침가되어 보다 깊고 중층적인 모순을 이루어, 세계의 식민지사, 전쟁사 그리고 여성사에서 찾아볼 수없는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글은 종군위안부의 성립과 전개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이룬 근본적인 구조로서 천황제와 그 군국주의적 발전을 그것의 여성에 대한 시각 및 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종군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원인 규명의 시도이다.

천황제의 확립과 여성

일본의 천황제는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접정치에서는 배제되었다. 그러나 난립한 세력들을 통일하여 시작된 江戸시대에 들어, 이전까지 무시, 방기되었던 천황은 통일된 권력의 상징으로서 이용되기 시작했고 幕末에는 천황중심주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인한 중세의 신분질서의 혼란 및 농민들의 반란에 대해서 지배계급이었던 무사들이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요구하게 되고, 여기서 민속종교적인 신화세계의 정통성을 갖고 있던 천황이라고 하는 이름의 절대주의적 정권의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립된 명치정부는 급속한 위로부터의 근대화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군사적 강대화의 추진력으로서의 천황제·이데올로기를 보다 철저히 전국민적으로 침투시킬 것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명치정부는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을 발포함으로서 명실공히 절대주의 천황제를 확립하였다. 이 헌법에서 천황은 모든 통치권의 총괄자, 육해군의 최고 지위에 있는 대원수폐하로서, 전쟁을 선포하고 계엄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鈴木裕子, 1991a:15) 또한 모든 일본 국민은 천황의 신하이고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당했으며 公교육에서 이러한 황국사관이 교육되게하기 위해서 1890년 「교육勅語」가 공포되었다.(鈴木裕子, 1989(a):7-16)

이렇게 성립된 천황제는 천황을 정점으로 한 매우 엄격한 계급사회로서 극심

한 차별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차별의 질서화는 계급에 의해서 뿐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학교, 동네, 지역사회, 가정 등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部落民과 같은 특수한 피차별집단도 존재하였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대표적인 차별의 질서화의 한 형태로서, 천황제는 천황을 정점으로 한 거대한 가부장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이 전체적 체제를 받쳐 준 것은 하나하나의 가정에서 가부장적 질서를 만든 「家제도」였으며, 다른 한편 남성의 일탈적 성행위를 흡수하고 이로부터 家제도를 보호·유지시키는 기능을 한 公娼제도도 천황 가부장제를 떠받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다.

처와 자에 대한 가장권이 절대시되어 권위와 순종이 기본원리였던 家제도는 江戸中期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江戸末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확립되어온 제도로서 명치기에는 헌법과 민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中根千技, 1983: 7) 이 법에서 妻의 지위에 있는 여자는 법률상의 무능력자로 되어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법률상의 의미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夫의 소유물이므로 부의 승락없이 행동하지 못했다. (角田由紀子, 1989: 197)

가부장제적 사회체제는 이러한 家제도로 구성되었던 한면,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公娼제도를 발전시켰다. 공창제도는 국가가 업자와 창기에게 허가(鑑札)를 주고 그 대신에 세금을 받는 국가 공인의 買賣春제도로서, 德川家康시기에 확립되어 명치시기에는 전국에 확산되었다. 매춘은 이전시기부터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른 성의 상품화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것을 유곽을 중심으로 한 (集娼제도) 공창을 확립하여 확산시킨 것은 전란이 계속되어 불안에 떠는 무사들의 성적 욕구를 풀 공식적 장을 만들어 주어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家제도의 혼란을 방지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이룸으로서 반항적 성향을 다스리려는데 그 직접적인 동기가 있었다. (深江誠子, 1989: 202-205) 이것은 남성의 일탈적 욕구를 자연적인 것으로 보아, 여기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춘은 필요악이라고 여기는 인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林千代, 1992: 125) 명치정부는 창기에 대하여 매독검사를 실시하였는데(山下英愛, 1992: 6-7) 이것은 창기에 대한 배려보다는 가부장적 家, 특히 무사계급과 그 가정의 보호에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공창제도는 명치정부가 천황제를 확립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같이 천황제의 가부장적 체제의 두 기둥은 家제도와 공창제도로서, 이것은 공히 여성멸시사상에 바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계급에 기초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반영하며 상호 존립의 근거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군국주의화와 여성

일본의 절대주의 천황제는 명치헌법의 발표 후에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것은 일관하여 군국주의적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내적으로는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고, 외적으로 청일전쟁(1894-5)과 노일전쟁(1904-1905)에 승리하고, 대만과 한국에의 침략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후 만주사변(1931)을 기점으로 준전시체제에 들어가고, 중일전쟁(1937)으로 본격적인 전쟁기로 돌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윤리와 권력이 천황에게로 수렴되는 초국가주의적 천황제에 의해 수행

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천황의 통수권을 확대하는 한편, 명치헌법에서 생각되고 있던 내각, 의회, 추밀원등의 체제가 아닌 고도국방국가를 구상하여 구조를 정비하였다. (宮地正人, 1988: 98-100) 이러한 체제로 전쟁기에 일본정부는 국가총동원법(1938)을 비롯하여 국민징용령, 징병령(1944)에 이르는 일련의 국민동원을 위한 조치를 행하였다. 또한 천황제는 국가기관으로서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도 중요하여, 신권적, 군사적 천황, 대원수적 천황의 이데올로기를 국민의 말단까지 침투하였으며. (宮地正人, 1988: 99) 이와 함께 사회운동의 차원에서도 국민정신총동원운동, 大政翼賛會의 조직 등의 황국신민화를 위한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본 팟시즘은 서구의 팟시즘과 구별되는 몇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그 중 중요한 점으로 가족주의의 성향과 大아시아주의 사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를 가족의 확대로 보는 인식과 함께, 실제로 本家로서의 천황가와 방계가족으로서의 국민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국가의 성향을 드러냈는데, 이것은 명치시대 아래의 천황제의 가부장제적 성격의 발전인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는 또한 아시아諸국에 있는 서구제국주의 세력을 쫓아내야한다는 大아시아주의를 내세우며,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 중심의 대동아공영권의 구축이라는 구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전쟁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고 식민지의 민족말살정책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丸山眞男, 1964: 29-87) 주지하는데로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한국에 구극적으로 민족말살을 꾀한 황민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内鮮一體, 一視同仁의 이름으로 일본어 강요,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鈴木裕子, 1991(a): 19)

이러한 일본의 군국주의에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천황의 臣民인 남성을 떠받치는 도구로 여겨져, 한편으로 臣民을 낳아 교육하여 천황에게 바치는 家 속에서의 여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신민,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민인, 전시하의 불안한 상황에 있던 皇軍을 위무하는 여성으로서의 차별적 역할이 주어졌다. 이것은 천황제 초기부터의 전반적 여성비하와 계급에 기초한 차별적인 여성인식과 그 맥을 같이 한 것이었다.

군국주의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여성교육에 주목하였는데 여기서 교육의 틀은 家와 國과 母의 결합이었다. 1931년에는 대일본연합부인회가 이 목적을 위해 발족되고, 다음해에는 대일본국방부인회가 만들어졌다. (鈴木裕子, 1989(a): 22-23) 중일전쟁 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모성을 통해서 여성의 사상동원을 도모하여, 「일본의 母」, 「군국의 母」, 「靖國의 母」, 「健兒의 母」, 「健民의 母」, 「興亞의 母」, 「母를 찬양함」 등의 책이 출판되기도 했다. (鈴木裕子, 1989(b): 21-23) 1940년의 大政翼賛會에 부인들이 참가하고(鈴木裕子, 1988: 53-73) 여러 부인단체와 이들의 연맹체를 설립하여 여성 입장에서의 총동원체제를 만들었으며, 그것은 황민으로서의 자녀양육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은 역할의 지위에서 소외된 하층여성, 대부분은 媚妓들이 황군위무의 역할을 맡았다. 전시체제에서 군인들의 전의를 고양하고, 불명불만의 폭발을 예방하며, 강간예방을 위해서 '황군장병들에게 주어진 선물'로 만들어진 종군위안부 정책은 (麻生徹男, 1939) 공창제도가 戰國시기末 무사들을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과 동일한 가부장제의 논리에 바탕한 것으로 공창제도의 한 변형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鈴木裕子, 1991(a):18)

군국주의 정책으로 군인의 수가 많아져 위안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족 차별에 의해 특히 여기에 민족 말살의 목적이 더해져 대대적으로 한국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한 것이다. 무사들을 위해 명치시기부터 있었던 창기에 대한 성 병검사가 종군위안부에게도 시행되었으며 여기서 '일본인 대부분이 급성증증인데 비해 조선인은 극히 소수만이 화류병의 의심이 간다'라고 한 당시 군의의 보고 (麻生徹男, 1939)는 이미 노일전쟁 후부터 군인들의 화류병으로 인한 병력약화에 부심하고 있던 일본군대에서(山下英愛, 1992:16) 한국 여성의 효용성을 더욱 인정 시킨 근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조선 여성의 연행의 범위가 넓혀져 갔지만, 그 일차적인 대상이 되었던 충은 가난한 농민층이었다. 그것은 사기 및 강제에 의존했던 모집방식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민족차별 내에 다시 계급차별이 일어났던 것이다. 전반적 여성의 차별 위에서, 일본여성 내의 계급차별이 민족차별과 연결되고 여기에 다시 계급차별이 더해진, 중중적 차별의 희생자가 바로 조선인 종군위안부였던 것이다.

조선인 종군위안부를 보는 시각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조선인 종군위안부의 연행은 천황제가 군국주의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군대의 필요에 의해 세운 종군위안부 정책을 식민지 조선에 강제력을 통해 시행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여성비하의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한 일련의 여성정책의 진전과정과 군국주의화에 따라 전개된 식민지 정책의 진전과정이 만난 지점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요컨대 조선인 종군위안부문제는 국가, 민족, 성 및 계급의 모순이 결집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네가지 차원의 문제의 결합은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기본적인 그러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얹혀 하나의 실태를 잡아 풀어 낼 수 없는 유기적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순의 구조를 잘 파악하여 문제해결의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본군국주의를 폭로함으로서 세계의 관심을 깨우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차별과 착취를 고발함으로서 세계에 인권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고, 성의 문제를 강조함으로서 일본과 세계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활동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다른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조치에 앞서 우리 국민 내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성과 계급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가 우선 이것을 민족의 문제로 인식을 공유할 것이 절실하다고 보겠다. 그런 위에 일본 군국주의의 실체와 가부장제적 천황제의 문제점 및 계급차별의 구조를 파악할 때,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山下英愛, 1992, 「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角田由紀子, 1989, 「性暴力と天皇制」, 鈴木裕子, 近藤和子 편, 「女, 天皇制, 戦争」, オリジンセンター.
高橋喜久江, 1992, 「今日の賣買春問題」, 立川, 女の暮らし聞き書きの會, 「つむぐ」, 8호.
宮地正人, 1988, 「政治史における天皇の機能」, 歴史學研究會 편, 「天皇と天皇制 考える」, 青木書店.
鈴木裕子, 1988, 「フェミニズムと戦争」, マルジュ社.
_____, 1989(a), 「ヒロヒト氏と昭和史と女」, 鈴木裕子, 近藤和子 편, 「女, 天皇制, 戦争」, オリジンセンター.
_____, 1989(b), 「女性史 拓く 2」, 未来.
_____, 1990, 「いまこそ“從軍慰安婦”にこだわる」, 「毎日新聞」.
_____, 1991(a), 「從軍慰安婦問題と日本女性」, 朝鮮人從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會, 「挺身隊問題資料集」.
_____, 1991(b), 「朝鮮人從軍慰安婦」, 岩波ブックレット No. 229.
麻生徹男, 1939, 「花柳病の積極的豫防法」.
深江誠子, 1989, 「賣春制度と天皇制」, 鈴木裕子, 近藤和子 편, 「女, 天皇制, 戦争」, オリジンセンター.
女性史總合研究會 편, 1982, 「日本女性史」 제 3, 4, 5권, 東京大學出版會.
林千代, 1992, 「日本型賣買春文化の成り立ち-家制度に縛られた性」, 立川, 女の暮らし聞き書きの會, 「つむぐ」, 8호.
中根千枝, 1983, 「家の構造」, 東京大學公開講座, 「家」, 東京大學出版會.
川島武宣, 1950, 「日本社會の家族的構成」, 日本評論社.
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来社.

(* 이 글은 '92년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때 발표된 내용이다.)

'정신대 규명' 일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정진성(정신대연구회 회장)

일본정부는 식민지 시기의 조선인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이 일본정부가 민간수준에서 발굴되기 시작한 자료와 생존의 피해자, 가해자들의 잇단 증언으로 인하여 더이상 그러한 태도를 견지할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지난 해의 일이다. 일본정부의 경찰청 등 6개 部 및 省은 작년 12월부터 7개월간 소관자료를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그 조사내용이 지난 6일에 발표되었다. 당초부터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입장의 변경 후 이루어진 일본정부의 첫 조사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기다려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발표가 중간 단계의 것이라는 일본정부의 시사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무성의하고 미흡하다는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1937년 중일전쟁(대체로 군위안소 설립의 계기라고 여겨져 온) 이전인 1934년에 이미 다수의 해군위안소가 존재했음을 밝히는 자료가 나타나고, 위안소의 설치목적, 규정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보고된 점 등, 몇 가지 평가할 점이 있긴 하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전에 민간 수준에서 밝혀진 사실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반적 규모를 짐작케 하는 자료가 없는 점, 강제연행 및 취업을 명분으로 한 사기적 모집방식이 대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위안부의 모집방식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각 문서의 발포자가 중대장, 부대장 등으로 되어있을 뿐,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군의 명령계통이 나타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일선에서 조선인위안부가 대부분을 점했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의 국적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점, 그와 관련하여 위안소 설치의 목적이 매우 피상적으로 언급된 자료만이 있을 뿐이라는 점 등이 심각하게 지적될 수 있다.

당시 위안부들의 우편저금에 관한 구체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우정성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는 점과 함께, 6개 部省에 조사를 국한한 이유와 근거도 납득되지 않는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자료가 보유되어 있으리라 짐작했던 경찰청 및 후생성에서 한건의 문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자료 은폐, 또는 적어도 폐기의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구를 불러 일으킨다. 만약 정부자료가 이러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정부는 실제 경험자들의 증언과 현지의 탐사를 통한 보충조사를 실시해야함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증언청취는 그 신빙성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이 모든 점들이 일본정부가 과연 자료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조약에서 청구권이 종결되었다는 의견을 재차 확인하여 정식 배상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생활기금 형식의 비공식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점과, 종군위안부 문제만을 크게 잊슈화하여 근로정신대, 군인, 군속 및 태평양전쟁 희생자 등의 문제를 도외시하려는 의도와 함께 일관되게 문제의 축소해결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종군위안부를 포함한 일제시기 희생자 전반에 관하여 정부자료를 남김없이 공개하고 관계자의 증언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일본정부가 철저한 조사없이 비공식적 위로금 지급으로 이 문제를 서둘러 종결하려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촉구가 일본정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적일 수 없다. 그런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해야함은 물론, 일본 연구자와 민간단체의 역할에도 그 자체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정부와 국민, 학계의 힘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태도는 극히 미온적이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타부시하려는 사회전반의 분위기, 일제시기 민중의 피해사를 외면해 온 학계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종군위안부문제가 우리역사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는 인식, 이러한 문제 제기가 한일간에 새로운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등을 바탕에 짧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수치의 역사를 보는 시각과 자세가 그 민족의 내일을 가늠케 하는 것이며,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는 의연한 자세가 약소국이 국제관계를 협상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보다 주체적인 자세로 적극적 조사와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전반의 의식을 진작시켜야 할 것이며, 학계도 충독부, 군청 등의 자료 및 당시의 신문, 잡지에 대한 검토, 피해자의 증언 청취, 현지탐사 등, 자료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와 같이 소수의 여성단체 중심의 외롭고 가난한 싸움에 이 일을 맡겨두는 것은 우리가 일본정부의 역사매몰, 역사의 책임회피에 공범이 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이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확정짓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역사 속에서 실종되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민간단체도, 연구자도 직시해야 한다.

(* 7월 9일 한겨례신문 시론에 게재된 내용)

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가?

上坂冬子氏의 논의에 대한 비판

정진성(정신대연구회 회장)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식민지 시기의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상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말에 上坂氏가 「週刊 ポスト」에 기고 한 글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글에서 上坂氏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한국에서의 고조된 분위기를 오로지 배상 청구를 위한 것으로 축소시키며,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경제 및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上坂氏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역사 인식에 바탕하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없을 수준의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양심적인 사람을 제외한 많은 무관심한 일본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해 확실히 밝히고자 한다.

우선 한국의 식민지적 병합과 이에 따른 일본의 한국민에 대한 약탈과 차별은 어떠한 이유로든 은폐되어서는, 더구나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이를 소멸하고 은폐시켜왔던 이제까지의 태도로부터, 최근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거 식민지적 병합을 행했던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정리에 성의를 보인다 비해, 크게 늦은 일이다. 이러한 때에 이것이 당시의 세계적 상황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으며, 당시 민족차별은 없었다고 한 上坂氏의 주장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러한 그보다 더한 행위를 반복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인가? 더욱이 당시의 일본정부가 한 행위에 대해 군대도 없어진 현재의 일본정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한 주장은 한치의 역사인식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上坂氏의 의견은 일본의 역사적 발전을 뒷걸음질시키고 문명인으로서의 일본인의 위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

上坂氏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이 최근 종군위안부 문제가 크게 여론화되고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갖는 시각은 왜 지금 그것이 문제됐는가하는 의문과 결국 그것은 배상문제로归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로 요약되는 것 같다.

분명히 이 문제가 최근 갑자기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1980년대 초부터는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소설과 영화의 형태로 사회적 관심을 모아왔다. 그것이 지난 수년간 국제여성운동의 기류에 힘입어 발전한 한국의 여성운동에 의해 본격적으로 접근되기 시작했으며, 비약적 발전을 이룬 직접적 계기는 작년, "이제는 이야기해야겠다."고 나선 종군위안부 출신의 한 할머니의 폭로가 불을 당긴 것이다. 작년 말부터 이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이 속속 발굴되고 피해자의 증언이 이미 수백에 이르도록 축적되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1965년 협정으로 문제가 완결되었다는 논리는 이러한 새로운 사실의 발굴로 인해

정면으로 부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처절한 사실 앞에서 일본인들이 왜 지금 이것을 문제시 되는가를 묻는 것은 不義에 대한 일본인들의 무감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전율스럽다. 양심적인 일본인들이라면 지금, 어째서 이러한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이제까지 묻혀지고 침묵되어 왔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의 표출이 경제적 이득을 겨냥한 행동이라는 비판은 한국의 사회 분위기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宮澤수상의 내한時, 정신대 문제가 크게 여론화되었을 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우리가 당면한 무역역조 등 경제현안의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것이 경제현안을 뒤로 미루려는 일본정부의 술책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퍼지기도 했으며, 지금도 이러한 운동이 우리의 실제 이득에 反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정부의 태도는 사회운동의 기운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이것을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시각은 아전인수격의 절대로 잘못된 생각임을 말해둔다.

이러한 운동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배상, 더욱이 "위로금" 형태의 오만한 배상을 유일의 목적으로 할 만큼 우리는 간단히 경제적인 존재가 아님을, 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일본인들은 적시하기 바란다. 우리의 운동은 무엇보다도 묻혀진 역사의 복원작업이다. 우리는 일본정부와 군의 고의적 소멸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을 문서와 기록을 찾아내고, 아직 다수 찾을 수 있는, 곧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갈 생존의 피해자를 찾아 이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찾아낸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는 3월 20일 현재 157명에 이른다. 우리는 한국, 일본, 미국의 정부간 협력을 통한 공식 문서의 발굴작업을 촉구하며, 일본 내에 당시 이 문제에 관여한 정부와 군대의 당사자들의 증언이 모아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미 이 일로 일본의 여성단체 및 국제여성단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 필리핀 등지의 단체와도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곧바로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연결된다. 예컨대 종군위안부를 "필요악"이라고 한 上坂氏의 시각은 이제까지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여 언어도단의 물역사적, 비윤리적 인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매춘여성에 국한하여 소수만을 동원했던 일본인의 연행에 비하여, 모집과정에서의 사기, 납치, 강간, 공중변소로 묘사된 전장에서의 이들에 대한 대우, 전후 증거인멸을 위한 유기, 집단살해 등으로 요약되는, 마치 요즈음의 인신매매단과 같은 일본정부의 나이 어린 조선인 소녀들에 대한 대대적 강제연행을 어떻게 필요악으로 합리화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매춘과도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여성의 성적 노예화(sex slavery)였다는 것이 최근 국제여성단체들과의 공동인식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는 피해자들을 물질적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치유해주어야만 한다. 배상의 문제는 그 중 한부분이나, 피해자의 대부분이 고령자 이므로 그 시급성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본인들이 편협하게 이 문제를 고작 경제적 배상의 문제로 축소시킨다면, 그것이라도 조속히 해결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정신적 배상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곧 일본정부와 사회에, 이에 대한 적극적 문제의식, 즉 과거에 대한 철저한 참회와 사죄,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앞으로의 다짐을 요

구하는 것이다. 일본은 최근 세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위치를 점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한 평화의 약속을 먼저 아시아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실천하여 증명할 수있기를 바란다. 이번의 문제는 일본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귀중한 기회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적은 수이지만 진심어린 일본인의 협조를 받았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끓어 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누르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하고자 노력한 것은 이 양심적 일본인들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 이 글은 일본내 한국인 독자를 상대로 하여 발간되는 「코리아 투데이」에 게재된 내용이다.)

정신대(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전개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

요즈음 한·일간의 현안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면서도 아직 외교적 쟁점으로 가닥을 잡지 못한 체 우리 민족의 분노와 자존의 문제로 얹혀 있는 사안이 바로 여자 "정신대" 문제이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정신대 문제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아직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디에서 얼마만한 정신대가 어떻게 끌려 갔으며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대" 문제 만큼은 민족 수난사의 가장 생생한 한 장면으로서 제기되어야 하며 또한 밝혀져야만 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이러한 정신대 문제의 총체적 실상을 규명하고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36개의 여성단체들과 관심있는 개인들이 모여 1990년 11월 16일에 형성된 단체이다. 정대협이 구성되고, 정신대 문제 가 사회의 관심으로 대두되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80년 초부터 정신대문제를 꾸준히 불잡아 연구하고 활동해 오던 소수 관심있는 학자 및 여성단체들의 노력이 있었고, 70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일본의 전후 처리를 주장하고 요구해 온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활동이 계속 있어왔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시작된 정신대문제에 대한 운동이 지금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전후 식민지 지배 문제에 대한 처리과정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간에 전후(戰後) 처리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전쟁이 끝난지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이나 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청구권 문제는 '65년 한일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정신대문제를 비롯 식민지 만행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진정한 사죄도, 배상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협정은 일제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 통치가 끝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결된 것이지만 마땅히 과거의 역사에 대한 청산의 표현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과거의 침략시대에 대한 일본측의 사과 및 반성의 의사표시는 전혀 없다. 한일협정에서 다루어진 의제는 전체적으로 한일기본관계, 대일재산청구권,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명화선, 어업문제라는 4가지의 주요의제로 국한되고 말았다. 이들 의제중 일제하의 강제연행자 문제와 관련있는 대일재산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대일배상의 청구를 포기한 상태에서 '재산청구권'에 의제를 국한시켰고, 내용 중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이라는 조그만 구절이 눈에 뜨일 뿐이다. 이러한 재산청구권 문제는 5.16이후 군사정권이 정권의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발전계획을 급속하게 추진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한일협정에서 구하게 되자 결국 무상3억, 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 자금 지원으로 청구권은 결말을 보게 된다. 더군다나 정신대에 관한 문제는 언급조차 없으며 일본은 국가개입 여부를 부정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일 국왕이 '통석'이라는 묘한 용어로 사죄 비슷한 말을 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대 문제 보상청구권 조차도 한일협정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당시 한일협정에 의해 받은 차관 5억달러는 경제협력금의 명목이었지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개별배상금의 성격이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정신대 피해 배상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한일협정 체결시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므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안상운 변호사는 국가의 배상청구권과 개인의 그것은 엄연히 별개라고 보면서 전쟁책임을 묻는 데는 전쟁배상과 민간배상이 있으며 그 중 전쟁배상은 당사국 정부간의 협정을 통해 포기할 수 있으나, 민간배상 청구권은 국가에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한일협정을 평계로 정신대문제의 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식민지 만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인 것이다.

2.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

1)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활동

1988년 2월에 15일동안 정신대발자취를 따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오끼나와까지 답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께 자료수집, 증언채취가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정신대 문제에 대한 운동이 조직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대판 기생관광 반대운동인 정신대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신대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 회원들에게 홍보작업을 하는 한편, 꾸준히 일본 정부에게 진상규명과 공개사죄를 요구해 왔다. 교회여성연합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에 정신대위원회가 설치되고, 일본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일본 외무성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정신대 희생자 자신들이 죽음을 가까이 한 나이에 이르러 50년 동안의 고통과 한을 딛고 일어서서 증언에 나서게 되어된 것이 정신대 문제를 역사의 전면에 떠올리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교회여성연합회의 '교회와 사회위원회' 내에 정신대문제위원회가 설치되고,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제'에 정신대 추모제를 추가하면서 일본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일본 외무성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구성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 방일때 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하여 교회여성연합회, 여대협 등 여성계가 모여 정신대 문제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문을 성명서로 발표하면서 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1990년 11월 16일 36개의 여성단체와 관심있는 개인들이 중심이 되어 정신대 문제에 대한 공

동투쟁체인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가 발족되게 된다. 이 때부터 정신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조직적으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정대협은 정신대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할 민족과 여성의 자긍심의 문제임을 폭로, 선전해 나갔으며 일본정부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해결작업에 들어갔다. 활동은 일본정부에 대한 활동과 한국정부를 향한 활동, 그리고 국민에게 홍보, 국제적으로 실상을 알리고 연대하는 활동과 정신대 할머니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1) 일본을 향한 활동

1990년 10월, 교회여성연합회와 여성단체연합 등 한국의 여성운동단체들이 함께 일본정부에게 정신대 문제에 대한 공개서한을 채택, 보내게 된다. 그 공개서한에서 우리의 요구 6가지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첫째, 일본정부는 조선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둘째,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세째, 만행의 전모를 스스로 밝혀라.

네째, 희생자들을 위하여 위령비를 세우라.

다섯째, 생존자와 유족에게 배상하라.

여섯째,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역사교육 속에서 가르쳐라.

1991년 1월 8일에는 '가이후 일본수상 방한에 즈음하여 정신대 문제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을 밝힌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탑골공원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범 국민적인 관심을 도출해 냈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위 6가지 요구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시위를 실시하기로 결의, 매주 수요일 12:00-13:00에 일본 대산관 앞에서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수요 시위에는 피해자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어 대사관 주위를 행진하면서 홍보 및 국민동참을 호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을 향한 활동중 태평양 유족회에서 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또한 중요하다. 6월 1일 동경에서 열린 첫 재판에는 41명의 원고 중 종군위안부 9명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이는 최초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 놓은 법정 투쟁이어서 일본 내의 여론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여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리라 생각된다.

(2) 한국정부를 향한 활동

정대협은 일본정부에 6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한국정부에 정신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일 것과 독립기념관 내에 추모비를 세워 다시는 이 민족의 역사에 이러한 굴욕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 되게 해야 함을 주장해 왔다. 또한 현재 생존해 계신 정신대 피해자들의 생계보호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민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정신대 신고전화를 각 구(區)마다 개설해 놓고는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입장이나 해결의지는 전혀 나타내지 않고 여전히 일본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정신대」 실태조사 발표는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정신대 문제 자료들의 일부를 짜깁기식으로 묶은 것에 불과하며, 강제연행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것도 70년대 초에 발간된 자료들, 그것도 현재 일본에 의해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조사,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에 있어서도 조사나 검증없이 아주 피상적으로 몇 사례들을 예로 나열했을 뿐이다. 정말 한국정부가 정신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우선, 구 총독부 자료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식민지 시대 때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내무부에서 각 구청이나 면사무소 등에서 구 식민지 자료들을 발굴하여 그 당시 각 면, 군 단위로 정신대 인원 모집이나 인원방법 등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강제연행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3) 내부활동

<정신대 신고전화 운영>

정대협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그 당시 종군위안부였던 증인을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 해왔다. 그러던 중 1991년 8월 14일에 원폭피해자인 이명희(67세) 할머니(히로시마에서 원폭을 당한자로서 자녀들은 현재 정신병자이고, 본인은 여름만 되면 피부에 이상이 생긴다. 1990년 8월에 일문화원 앞에서 농약을 먹었다가 교회여성연합회에서 알게되어 치료를 해주고, 집을 마련해 주었다.)가 김학순 할머니를 직접 교회여성 연합회에 모시고 와서 김학순씨가 종군위안부였음을 폭로하는 최초의 증언을 하게 된다. 김학순 할머니는 TV를 통해서 정신대문제에 일본정부 관여사실을 부인한 내용을 접하게 되고 이에 분노하여 신고할 뜻을 밝혔노라고 그 당시 첫 말문을 여셨다. 이 첫 증언자의 등장에 따라 정신대 신고전화 신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정대협은 교회여성연합회의 도움으로 730-4400번의 정신대 신고전화를 설치하게 된다. 그러자 문옥주 할머니를 비롯하여 5월 말 총 200여 건의 정신대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정신대 신고전화 개설로 인하여 정대협의 활동은 더욱 더 활기를 띠게 된다. 그리고 신고전화 개설 이전에는 주로 정대협의 요구를 공개서한 형식을 빌어서 일본과 한국정부에 보내거나 시위주도를 해 왔으나 피해자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아픔에 함께 하는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그들의 생활대책을 세우는 활동도 아울러 전개되기 시작한다.

현재 생존해 계신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민족멸살 정책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억압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를 절감할 수 있다. 생존자들은 그 때 당시 당한 피해로 말미암아 정조관념이 일반사회를 지배하고 있

던 사회에서 평생을 죄인아닌 죄인으로 살아왔으며 지금까지도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외롭게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시작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부끄럽다 여기지 않고, 그들이 겪은 일을 다시는 후세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어렵고 외롭게 살아가고 계시는 그 분들의 남은 여생이나마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살펴 줘야 할 과제가 있다.

<연대활동>

정신대문제가 단순히 한국여성들만의 문제도, 우리 민족만의 문제도 아님을 인식한 정대협은 이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회의를 준비하게 된다. 일본의 정신대 관련 단체와의 활동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고, 「유엔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NGO)들에게 정신대문제에 대한 사실과 이에 대한 일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폭로하고, 정신대문제 해결운동에 동참을 호소해 왔다.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정신대문제를 접수시켰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92년 5월에는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인 현대판 매춘문제 관련 실무위원회에서 정신대문제가 제기되었으며 8월 소위원회에서 다시 정신대 문제가 제기될 예정이다. 이 때 정신대 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현재 정대협에서 로비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피해를 입은 아시아계 여성단체들과도 연대의 를을 준비해 왔다. 이미 대만 여성단체에서 정대협의 활동에 대해 조사해 갔으며 필리핀에서의 정신대 실태 및 대책활동에 대한 소식을 교류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 연대회의 형성을 통해서 정대협은 정신대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후 배상책임을 더 힘있게 요구해 나갈 것이며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대협은 회원단체가 아닌 국내 다른 단체와도 연대의 를을 형성해 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 라이온스크립」, 「여성단체협의회」 등 정신대문제에 관심있는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형성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홍보활동>

정대협은 정신대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활동 또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소식지와 홍보전단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전하는 일과 정대협에서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 혹은 각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정신대였던 할머니들의 증언 및 문제의 실상을 국민대중에게 홍보, 교육하는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 홍보활동에는 실제 피해자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정신대신고에 접수된 할머니들은 초기에는 주로 가슴에 헛을 안은 채 이웃과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온지라 말문을 터뜨리기가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누다 보니 이제 그들은 정신대 문제의 실상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찾아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대연구회 활동: 자료발간>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업에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문헌, 자료연구 등을 주로 하고 있는 「정신대연구회」의 활동은 정대협의 활동 중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현재 1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신대연구회」 회원들은 정신대 신고전화에 접수된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패해상황을 직접 듣고, 그것을 자료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역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4) 정신대 할머니들 자조회인 무궁화자매회 결성

지난 5월 1-2일 양일간 감리교여선교회관에서 「라이온스크립 여성분과위원회」의 후원으로 정대협에서 전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경로잔치 자리를 마련했다. 이 모임에서 할머니들은 그들의 자조회를 만들었고, 그 모임을 「무궁화 자조회」로 명명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정신대문제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현재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 중심으로 형성된 무궁화자조회는 그들의 어려운 생활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돌보며 가족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은 한 자매와 같이 지내고 있다.

3. 남은 문제들

1)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정신대문제에 대한 일제만행의 자료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생존자들의 어려운 생활상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대협에서 요구해온 어떤 사항에도 정부는 대답을 않고 있다. 정대협은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정신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함을 주장해 왔고, 그 조사를 함께 있어서도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의 증언청취가 중요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연구조사에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신대 문제에 대한 정책발표나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생계대책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에 대해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모든 청구권이 해결되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입장을 수긍하면서 한·일간의 사이에서서 꼭 해결해야 할 정신대 문제해결에 대해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2) 범국민적인 활동 필요

정신대 문제는 단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일제의 침탈로 인해 발생한 전 민족적인 문제이고 분명히 우리 민족사에 새로이 정립되고 마무리 지어져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호응은 여전히 냉담한 실정이며 정신대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 역시 가부장제적이다. 한마디로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왜꼬집어 내느냐'는 식의 역사관과 성의식(性意識)을 가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화 작업 또한 앞으로 정대협에서 과심가져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일본은 전후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정치, 군사 대국화를

기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2차 대전에서 저지를 범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해결없이 군사 대국화 하는 것에 대하여 과거 '대동아 공영권'을 앞세운 침략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일본에게 경제적, 문화적 예속이 되어 있는 한반도가 이제 군사적, 정치적 예속으로의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희생자 중심의 태평양유족회나 정대협에 소속된 몇 회원단체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전후책임에 대한 일본의 완전 청산문제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3) 피해자들의 생계대책의 과제

정신대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나이도 연로하고 위안부 시절의 휴유증으로 인해 건강상태도 아주 좋지 못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일일 파출부나 새마을 취업사업 등으로 하루 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불안정한 주택사정은 그들의 건강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 민족이 가장 어려운 때에 민족의 수난을 사회 제일 밀바닥에서 체험한 분들이다. 그 분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요,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짊어진 희생양이었다. 그러나 그 분들이 해방후에도 역시 가장 밀바닥 삶을 살아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해방후의 정치가 일제시대의 연장선에서 계속 유지되어 왔고, 그런 상태에서 한 민족이 두개의 나라로 분단되게 되고, 분단 이데올로기는 일 제국주의 청산보다는 제국주의하에서의 충신들을 보호하고 이용하는 정치로 일관하여 온 것에 그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또한 가부장제 한국사회에서 할머니들의 과거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조차도 용납할 수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분들은 다시 한번 버림받고, 소외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아픔은 이 민족이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해 진상규명과 역사정립 및 책임부분을 계속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분들의 어려운 생활돕기에 국민과 정부의 도움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4) 근로정신대, 군인, 군속, 피폭자, 사할린 잔류자등 강제연행을 당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과 해결 촉구

일본의 조선침략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은 비단 종군위안부 뿐만 아니다. 강제징용 및 징병자, 조선인 피폭자, 사할린 잔류자 그리고 근로정신대를 역시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한 희생을 당해 왔다. 지금까지 일본이나 한국에서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다고 생각된다. 일본은 정신대 문제가 대두되면서 계속 전후처리문제를 종군위안부 문제로 축소, 생존자 몇분을 위한 기금창설 등으로 전후책임이라는 큰 물결을 막으려 해왔다. 그러나 12세, 13세에 공장에 끌려가 어떤 보상도 없이 일본의 전쟁 물자를 생산해 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과 태평양전쟁 피해의 진상규명은 물론이거니와 명부공개, 유골귀환, 공탁금 반환 등을 포함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대협의 운동을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근로정신

대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강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유족이나 희생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여성들이 근로정신대 영장을 받고 끌려간 후 실종되기도 했고, 전선으로 끌려가 종군위안부로 활동하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자료발굴과 연구가 있어야 하리라 본다.

5) 남북 공동대처 방안 모색

정신대 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이다. 더욱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단의 원인이 일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볼 때(중앙대 명예교수 유인호는 분단의 원인을 일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정신대 문제에 대한 남북공동대처는 그들이 갈라 놓은 분단에 개의치 않는 우리의 의지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하루 빨리 민간차원에서 남북공동 대책위를 만들어 정신대 문제에 대한 한민족 전체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증언자 발굴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4. 맷음말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패전국 일본이 그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없애버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정신대 문제는 분명히 그 진상이 누구에 의해서건 규명되어야 한다. 정신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를 폭로함으로써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교훈으로 깨우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차별과 착취를 고발함으로서 세계 인권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는 문제다. 또한 성의 문제를 강조함으로서 일본과 세계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활동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조치에 앞서 우리 국민 내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성과 계급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 모두가 이것을 민족의 문제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위에 일본 군국주의의 실체와 가부장제적 천황제의 문제점 및 그들이 저지른 인권유린의 현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식민지 청산을 위한 것이고, 우리 민족과 여성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일이며 또한 아직도 계속 이 땅에 대해 그들의 군주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경고가 되기 위한 것이다.

제 123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 6호

(제 14부)

평성 4년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개회

* 시미즈 스미꼬

나는 작년 12월 본 예산위원회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그 때 정부가 그 문제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한·일·조간의 외교 문제로 발전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 후 여러가지로 발전된 까닭도 있겠지만 그 진전 상황과 금후 관망에 대해서 들려 주십시오.

* 국무대신

그것은 군이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일인지 지역에 따라서도 분명 다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종군위안부가 된 분들 중에도 천차만별의 상황이어서 실태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실태로서는 각 성청에서 되도록이면 실제적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입니다.

* 시미즈 스미꼬

여섯 청이니까, 그러면 한가지 한가지 말해 주십시오. 어떠한 단계적인 조사를 통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 정부위원 1

그러면 우선 외무성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말 내각 관방의 조사하에 관계 여섯 청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라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외무성에서도 보관중의 문서에 대해 지금 성심 성의로 대신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조사가 되어서 다소 시간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의 결과가 판명되는 대로 곧 내각 관방께 보고올릴 예정입니다.

* 정부위원 2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청에서도 작년말 내각 관방으로부터 방위연구소를 시작으로 육상, 해상, 항공의 각 자위대 혹은 방위대 학교 등의 각 기관에게 관계 자료 유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이 때까지 신문에 보도된 것을 포함해서 69건의 자료가 발견되고 있음에 의해 내각 관방 쪽으로 즉각 발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위원 3

우리도 방대한 자료를 성실히, 지금 다시금 검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정리가 되는 대로 곧 내각 관방에게 보고할 생각입니다.

* 정부위원 4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쪽에서도 경찰청으로 작년말 내각 관방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원래부터 전국, 군, 도, 부, 현, 경찰에 대해 관련의 자료가 있던, 없던 간에 현재 조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다 할 정보에는 접근되지 못하고 있지만 더욱 자세히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 정부위원 5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부성에 있어서는 전국 국·공립 도서관, 국·공립 사립 대학 부속 도서관까지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중입니다만 현재로는 공립도서관 관계로 오끼나와 교육위원회로부터 동 현의 한 시립도서관 소장자료 중에서 당시의 자료가 전재되어 있는 취지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각 관방외정 심의실에 보고 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부위원 6

노무성의 상황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성내 관계부국 및 관계기관에게 그 소관하는 참고, 서고를 조사하였으나 조선반도 출신의 소위 종군위안부에 관한 공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행정관계자로부터도 브리핑을 해 보았지만 해당 행정기관, 그리고 관계기관은 조선반도 출신의 소위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들고 있을 때입니다. 이후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성이긴 하지만 관계성정의 일원으로서 성의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 시미즈 스미꼬

그러면 관방장관, 현재 집계된 자료 중에서라도 좋으니 파악된 부분만이라도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자료중에서 왜 종군위안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과 그리고 그의 설치목적과 지리적 확대 그리고 경영의 실태, 그러한 것들에 관해 답해 주십시오.

* 국무대신

과거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의 치안문제를 생각하면 필요로 했다는 기록 등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외정실장이 답하겠습니다.

* 정부위원

방금 관방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그러나 그래도 오래전 사건임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발견된 자료에서는 당시의 전선상황으로 보아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기에는 군 점령지 내의 일본군인이 주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의해 반일감정이 일어나 치안회복의 진전이 어려워지는 이와 같은 설비를 지장할 필요가 있었던 일 등의 상황이었다는 것이 나타난 자료에서 보여지는 바 미루어 짐작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확대에 따라 질문하셨지만 이것도 또한 완전히 완전히 조사를 마친 것도 아닌 까닭에

포괄적으로 확실히 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국, 홍콩, 필리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에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시미즈 스미꼬

대단히 불성실합니다. 먼저 자민당의 사이또 의원이 정부의 간행물이 대단히 읽기 힘든데다가 내용이 대단히 어설프다던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은 내가 방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서 만도 전부 있는 정도밖에 답변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비상시 무슨 대원의 건강 때문에라든지 그래서 건강때문에 종군위안부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그렇게는 서 있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치안이라 말하지만 왜 치안이 필요했었는지? 전부 기록되어 있으니 자료중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바랍니다.

* 정부위원

선생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제출한 자료중에 본인이 지금 대략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먼저 불법행위라고 한 것은 군인이 제멋대로 현지의 여성들에 행해지는 불법 행위가 반일 감정을 수반하게 됨으로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로 한다고, 예를 들어 소화 13년 경 일련의 자료에서 그 후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을 정리한 것일 것이므로 되도록 정확히 전달해 드린 셈입니다.

* 시미즈 스미꼬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의 시간이 줄어지므로 매우 괴롭습니다만 정부로 부터 받은 자료 중에서 한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특히 성적 위안소로부터 생기는 병사들의 정신적 영향은 보다 심각해서 이것이 지도감행의 적부는 사기의 진흥, 군기의 유지, 범죄, 그리고 성병예방 등에 영향되는 바 대단한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이와 같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그 현지에서 병사들의 강간에 있음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군요. 어떻게 강간을 했기에 그 병사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한 숫자도 전부 나와 있으니 여러가지 문헌에서 이 때까지 알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한가지만 말했습니다만 전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해도 이런 식이라면 나는 질문을 계속할 생각이 없습니다.

* 정부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는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자료에 의해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셈입니다. 따라서 만약 그것들을 하나 하나 들어서 답하라고 하시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그래서 먼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해 주세요. 원인, 목적, 위안소의 수, 위안소의 사람 수, 알고 계시는 한가지 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의 허가증은 누가 발행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또한 이런 위안소의 위생관리는 누가 하고 있었는지? 우선 이런 것을 답해 주십시오.

* 정부위원

위생관리는 자료에 의하면 현지에 있는 군의관들에 의해서 관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안소의 이용규정 등에 대해서는 몇 건인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하에 이러한 시설을 이용 가능한가 등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신다면 잠깐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시미즈 스미꼬

먼저 질의한 사항에 대해 꼭 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바랍니다.

* 정부위원

방위청으로부터 내각 관방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먼저 말한 것처럼 69점이 있습니다. 이 69점의 자료는 대단히 많은 종류인 것으로 우선 의원께서 이것 를대로 자료에 전부 들어있지는 않는 까닭에 일부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총괄해서 통계목적에 제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연령에 대해서도 연령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는 불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컨대 검사당시의 연령이라던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추측해서 통계한다는 것은 더욱 안되는 일이므로 그 점 이해를 바랍니다.

* 시미즈 스미꼬

연령층은 나타나 있으니까 몇 살 부터 몇 살 까지라고만 해 주셔도 됩니다. 잠깐 점심시간에 맞추어 보았는데 부디 가지고 계신 자료중에서 알수 있는 범위에서 연령층은 어떠하다든지 목적, 원인은 어떠하였다든지 좀전에 대조하였던 그 점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 정부위원

방금 보고한 답변을 반복할 따름입니다만 연령층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는 본인이 본 것은 한가지였는데 그것은 검진받을 때 나름대로의 여성들 연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전체 연령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69점 중에 몇점 끼어 있을 뿐으로 이해바랍니다.

* 정부위원

내가 소개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 전에 질문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모집에 대해서는 「불통제 하에 모집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킬 만한 점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모집에 임명된 자의 인선에 적절한 자, 모집의 방법, 유치에 관해서는 경찰 당국의 검사취조

를 받은 일이 있는 자 등의 주의를 요하는 자가 적지 않음으로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모집 등은 파견군에 의해 통제하고, 운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실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입니다만 먼저 점심 때 요청하셨으므로 말씀드린다면 외출일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병사는 일요일로 하고 12시부터 18시까지로 함. 하사관은 수요일로 하고 12시부터 저녁점호 때까지로 함. 영외 거주자에 관해서는 규정치 않음, 운운한 것 이 있으므로 그 외 이것에는 요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만 예를 들어 「그러나 문 정보에 의한 이와 같은 강렬한 반일 의식을 조성하는 원인은 각 지에 있어서 강간사건이 전반에 번져서 실로 예상 외로 심각한 반일 감정을 조성하는 것에 있음을 말함.」 이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위와 같이 군인 개인의 행위를 엄중 취제함과 함께」 운운도 있기 때문에 「성적 위안의 서비스를 갖추고, 서비스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범행하는 자가 없도록 강요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에 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락소...로부터 26명, 요시하라로 부터 15명, 업자에 의해 준비하여 15일 경 출범하는 〇〇 배로서 수송예정이므로 인원의 수에 차질없음,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같은 것으로 보내라 하는 위안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의 전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관해서는 먼저 방위청의 관방장이 답하신 것과 같이 이런 저런 경우로 여러 곳의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연령은 여러 곳에서 여러 층이었다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내가 본 바에 의하면 대단히 답변하기 힘든 모양인듯 하지만 20세부터 30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15세 16세의 여성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여러가지로 수집된 자료에서는 어떠했는지를 묻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사실을 감추지 말고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먼저 경영중에 요금을 묻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정해졌으며 그리고 그 대금은 진짜로 지불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그리고 출신지로부터 이동되었을 것인 즉, 출신지로 어떻게 들려 보내겼는지? 귀환업무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했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부위원

요금에 있어서는 지불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지불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신지로 수송하거나 돌려보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화 20년 9월의 자료입니다만 「..선에 3,510명 태우고 10일 빨, 부산 14일 착, 선 인 상륙, 15일 빨」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요금은 지불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실제로 원 위안부라고 자처하는 분을 아홉 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만 그 중에는 군표도, 대금도,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분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실이라는 것

을 좀 더 여러모양으로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휘 명령입니다만 그것은 방위청에서 수집한 자료중에는 어떤 분의 이름이 있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 정부위원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지휘 명령권 자라 하심이 어떠한 취지로 질문하시는지 의중을 알 수는 없으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서가 가령 우리들이 제출한 서류의 하나라면 그 결제자는 대신의 위임을 받아 차관이 결제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지휘 명령권 자이었는지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확실히 결정지을 수 없을 듯 합니다.

* 시미즈 스미꼬

모두들 확실히 말씀하시지를 않는군요. 자료라 함은 어디까지나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본 것은 군 사령관 자료라 “힘이시꺼니”라고 똑똑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모 총장 ○○○ 육군대신○○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것은 똑바로. 역시 우리들이 그러한 과거를 사실은 사실대로 확실하게 자료에서 밝히고, 전체를 파악하고, 우리들이 후세에게 큰 교훈으로 삼게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답을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최고 지휘관의 이름으로 누가 그 자료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위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읽으신 문서가 잠시 내가 보니 차관이 결제한 「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차관인 "우메쓰다"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우메쓰다" 차관이 결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똑바른 자료를 말씀하시니까 우리들로서는 69건의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이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식으로 지적해 주시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많은 분량의 자료 탓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은폐하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있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 하신다면 그 부분을 다시 답하겠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실은 오끼나와의 보고를 보니 친지안에 위안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위안부는 비전투원인데 전쟁중에 그러한 비전투원을 함께 둔다는 것은 당시의 육전법규에도 위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사실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정부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는 전시법규 위배의 가부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민간인에게 대해 인도적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시 법규의 기본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소위 문민의 보호에 관해서는 이것은 의원께서도 아시듯이 2차 대전 전에는 전시 법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1949년 제네바 조약, 네개의 조약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소위 문민에 관한 조약이라는 식으로 시작하여 집대성 된 것입니다.

* 시미즈 스미꼬

다음에는 명부에 대해서입니다만 그 자료를 보고 그처럼 명확하게 각 부대의 지대까지 아주 말단까지 몇사람이라고 이름도 전부 기재된 명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부 등은 대단히 확실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지만 조선에서의 강제적으로 징모한 당시의 원 명부는 남아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안소의 설치장소에서 헌병대가 어김없이 명부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대단히 엄중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반면에 명부는 더욱 정확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점 어떻습니까?

* 정부위원(村田)

그 전체의 명부가 어떤 모양으로 관리되었는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위 연구소의 자료만으로는 잘 모를 수 밖에 없음으로 그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우리들은 저러한 보고서나 옛 구공문서 등만으로는 잘알수 없음으로 진실로 나는 잘알지 못합니다.

* 시미즈 스미꼬

부디 그런 일은 앞으로 조사할때 구체적으로 조사하시길 부탁합니다. 그것은 그 일, 한 조약협정 때의 특별위원이었던 자민당의 아라후네 의사가 같은 1965년 11월 20일에 地元의 후생공관에서 연설한 내용이 잡지에 쪽계재되었지만 그 중에 일본군대가 조선위안부 14만 2천명을 학살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인 수자입니다만 그들 위안부는 13만 내지 20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일, 한 조약협정 특별위원이란 분이 그 다음해에 운수대신이 되신, 아주 정치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분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터인데 정부는 이것을 굳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해 당시의 조사가 있었던 것인가요? 만약 없었다면 앞으로 조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정부위원(有馬氏)

앞서 관방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낼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찾으라는 시달로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그럼 반드시 그 명부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기록에 따르면 위안부의 태반은 조선의 젊은 여성들이지만 왜, 조선의 여성이 선택되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해 주길 바랍니다.

* 정부위원

구성의 비율 등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그렇다면 어느 나라 여성이 자료에서 나와 있는지, 구별해서 보고바랍니다.

* 정부위원

자료에 따라 이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조선쪽, 그리고 대만쪽, 그리고 반도쪽이라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강 그렇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또 적당히 하는군요. 중국도, 필리핀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자료에 충실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모집했다 했는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혀주세요. 그리고 그 때 일본군 경찰이 많이 동원당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동원할 만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들려 주세요.

* 국무대신

정부가 수집한 자료에서도 그것이 확실함으로 지금 의원님께 있는 것처럼 공표하고 있습니다. 누차 답변한 것처럼 소위 조선반도 출신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때 일본군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취지는 정부로서도 전부터 답변드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인식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미야자와 총리는 지난 1월 방한시에 종군위안부에 대해 실로 마음 아픈 일로 진실로 면목이 없다고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치의 요구를 받았다는 보도를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이 때 까지 정부가 조사한 사실, 그 보고에 의해 총리는 앞으로 그 사죄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제시해 주실 바랍니다.

* 국무대신(미야자와)

아까부터 듣고계신 것처럼 더욱 성심성의껏 조사를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이 계출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의 진행을 지켜보고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 시미즈 스미꼬

소송이라 함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과거의 역사를 이번 국회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총리 자신의 과제이고 책임이며, 전국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재판을 지켜본다는 것은 제 3자적인 발언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답해 주길 바랍니다.

* 국무대신

재판을 지켜본다는 것은 제 3자적인 발언이 아니라 제소된 것은 국내의 일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련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미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그러면 그대로 재판이 어떻게 되는 가를 지켜볼 뿐 지금 곧 구제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다는 것이군요.

* 국무대신

재판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나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외무대신, 우리들은 여로모로 신문 등을 보고 있습니다만, 중의원 쪽에서도 이 문제가 의론되어 대단히 전망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의 필요성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인가 성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될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국무대신

나는 이 문제는 법률논쟁을 얼마간 하고 있어도 이것은 이미 보상문제에 있어서 청구권은 방치, 이것은 국내 정부는 취급않고, 국제법상으로는 이미 매듭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기본적 입장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정치문제로서 위안부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 그래서 대단히 안된 일이긴 하지만 전쟁이란 늘 그러한 일이 뒤따르는 것으로 살해당한 사람이 있다거나 진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나 한팔을 잘렸다면가, 부상을 당한 등, 여러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중 군인, 군속의 경우는 상대국 정부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였다고, 가끔 같은 종군이라는 이름하에 강제적으로 끌려갔는지 어떤지 실태는 잘 모르지만 군이 관여를 해서 그와 같은 여러가지 말들이 지금 있는 것처럼 위안소란 것이 있었습니다. 종군을 하여 따라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말로 무엇이라 할까, 앞서 '일본의 吉原가 어찌니' 하는 읽은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 당시는 매춘 방지법도 없었음으로 그와 같은 곳으로부터 끌려왔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쩌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실태를 보지 않으면 모두 모릅니다. 실제에 있어서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정치문제가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임으로 사실은 사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준다고 해도 이것 또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특별히 정한다는 것도 대단히 곤란한 일, 그러니 3사람, 5사람 식으로 제소를 한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사람은 제소를 하지 않으니 모르겠다는 식은 이것도 참으로 곤란한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실태를 우선 확실하게 파악해서 위안이고 위령이고 무슨 사죄의 표현인지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느낌의 말들이 중의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실태를 알지 못하고는 우선 손을 댈 수가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진실에 의한 실태를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관방이 중심이 되어 지금 실태를 여러가지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단히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임으로 그리 급하

게 일주일 사이로 제촉해 봤자 그렇게 실태가 빨리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그것은 매일 같이 말이 도고 있습니다. 다른 분으로부터 그러니 같은 말이 되고 맙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을 둔 후에 실태가 해명되면 그 때까지는 또 무슨 생각이 나올런지 좀더 조사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시미즈 스미꼬

실태라는 것이 좀더 철저히 하지 않고는 앞서 전의 상황으로는 지극히 부분적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역시 종합적으로 문제를 밝혀 나가는 가운데 그 후에 여러가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므로 그 점에서 나는 여기서 특히 이제 부터의 조사에 대해 꼭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 때까지의 조사방법으로는 대단히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조선총독부 관계의 자료라든가 구 내무성 관계자료, 현병대 관계자료 등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참고인으로 부탁한 원 山口현 勞務報國會 動員部長인 吉田清治씨 등은 정말로 대단히 구체적으로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나타난 중언자 원 군대위안부들로부터 사실관계가 참고가 됩니다. 그 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마치 우리는 위안부란 일만 했던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들어보니 간호부 일까지도 강요당했습니다. 그것도 적십자의 모자를 쓰고, 그것을 씌우고 한달 간 여러가지 훈련을 받고, 간호부를 강요당했다는 보고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제 체험한 분들로부터 사실관계의 청문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실행해 간다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정말로 실태는 해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사하는 동안 제발 이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에 관한 정부 소관자료를 좀 더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체험자로 부터도 증언을 듣고 그리고 그 자료를 전면적으로 공개해 주기를 나는 부탁합니다. 또 이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밝혀 나간다는 성의있는 노력을 한 후 나는 피해자의 마음에 흡족한 사죄, 그리고 보상, 구제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만 관방장관은 그 책임자입니다. 그 결의가 어떠한지요?

* 국무대신

앞서 외무대신의 답변과 같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성심성의껏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법적 조치의 문제, 보상의 문제는 종리 대신의 말과 같이 이것은 법적으로는 결정이 끝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소권을 해하는 것은 아니니 그것들의 소송의 진행됨을 보아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그간 종리께서 방한에 의해 사죄의 뜻을 표하신 연유도 있고, 또 그 당시 분들의 서필로 표현할 수 없는 고초당한 쓰라림을 생각한다면 무엇인가 대책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한 뼈속 깊이 다짐하는 생각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처하는 대책도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 시미즈 스미꼬

매우 또 악이한 자세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실태

가 어떠했는지 어찌구 하는 것은 충분히 방위청의 그 자료를 본 것만으로도 정말로 내가 읽기도 부끄러운 듯한 상황이 나와 있고, 이번에 역으로 그런 대응을 받은 조선의 여성들과 여러나라의 여성들의 인권이라든가, 그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로 내가 일본인이라는 것만 갖고도 부끄럽게 느껴질 만한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열심히 조사를 부탁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조사할 때에 대장대신, 그 비용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예산은 계산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럴 생각은 있으신지요?

* 국무대신

지금 나름대로 각각 보고했듯이 아직 전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포괄적으로 보고 못하리라고 생각하며 현재 조사는 나름대로 관계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따르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예산은 필요없다 그겁니까? 방위청의 여러분은 그야말로 찬업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 짧은 기간에도 그런 상태인데 역시 정말로 철저히 조사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점을 꼭 좀 검토하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에 지금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 인권위원회에서 NCO의 국제 교육개발협회의 대표들이 2월 17일에 이 위안부 문제를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2월 25일에는 한국의 여성단체가 국제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 내에서 종군위안부 신고자가 3월 2일 현재 194명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원 위안부란 사람이 68명, 근로 청신대가 86명 행방불명이 40명이랍니다. 이것은 3월 숫자이지만 이처럼 점점 한국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마다 이번에 대만 여성단체의 방문을 나는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그 중에 위안부를 알선했다는 여성도 만나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대만, 필리핀의 여성단체도 지금 공동으로 국제 인권위원회에 제기시킬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종군위안부 문제가 한국, 조선과의 외교문제 뿐 아닌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일본이 지난 날에 일으킨 전쟁에서 범한, 그리고 아직도 보상하지 않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 특히 위안부를 강요당한 여성에게 끼친 심각한 생명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리는 국제적 여성의 인권문제로 발전된 종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에서의 생각하심으로 나는 국제적으로 통용못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부디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대신

일은, 있어서는 안될 전쟁이라는 싸움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진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평화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전쟁에 의해서 근 5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로 관계방면에 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시미즈 스미꼬
외무대신도 국제 인권 외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답해 주십시오.

* 국무대신
앞서 총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전쟁이란 참으로 비참한, 잔학한, 비도덕적인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두번 다시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은 전투원끼리 싸우는 것이 현실이고, 하물며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인가 어떤가 여러가지 국제적 규약, 조약 등이 있습니다만 그려나 전쟁이 되고 보면 무차별 사격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일들이 있어 이전에 이라크에서도 무슨 일이 있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나 누구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상을 당한다든지 하는 잔학한 참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시는 그런 짓은 안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강하게 다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만 법률상 여러가지 일로 결정이 나서 확실해진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전쟁의 피해자 개인에게 보상이란 말할 수도 없으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될 말입니다. 따라서 어디엔가 일단 선을 그어 놓고 있는 것이 이 때까지의 세계 각국의 취급입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는 어느 곳에 선을 그을 것인가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위안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면 일본에서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이 바로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일본인은 없었는가 자료를 보면 10대 5, 6의 비율로 장소에 따라서는 다수의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역시 일본 사람이 많았던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는 부분 밖에 못보았기에 잘 모르지만 그러한 것도 포함해서 나는 진심으로 열심히 검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시간이 없음으로 논쟁은 할 수 없으나 일본여성을 위안부로 삼은 것도 나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식민지 지배라는, 역시 민족적 지배와 차별이 있었다는 이 문제는 우리들 역시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전쟁 일반론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문제의 심각한 취급이나 사태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미온적이 아닌가, 매우 근심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음으로 다음으로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일·한조약의 청구권 협정인데 그 안에 이 종군위안부의 보상문제는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던 것인가? 어떻습니까?

* 정부위원
대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소화 40년의 일·한 청구권, 경제 협력협정 아래 아시는 것처럼 일·한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이 협정 제 2조 제 1항에 결론적으로 쓰여 있는 까닭입니다. 상세한 것은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협정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경제협력을 행하고 그와 함께 청구권의 문제는 일체 해결했다고 할 수 있게 된 까닭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매우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1965년에 이 문제는 끝났는지요. 그 관계를 말해 주세요.

* 정부위원
방금 최근까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는 의미를 나는 반드시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하간에 이 청구권 문제는 당시의 일·한 간의 긴 교섭 가운데 이모 저모를 토의해서 당초는 한 건, 한 건 청구의 사실을 누적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보상을 하도록 방법을 취할 수는 없을까 의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미 전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으로 또한 조선동란이란 대변이 크게 사건으로 게재되어 있는 까닭에 그 원인이 되는 자료, 사실관계 등이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쌍방의 법률적 생각방법이 대단한 격차가 있었음으로 결론적으로는 한쪽에서는 경제협력을 행하고 한쪽에서는 이 청구권 문제는 일괄 해결한다는 것으로 이 협정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때까지 때때로 설명드린 것과, 앞서 말한 것 사이에 별로 모순은 없다고 봅니다.

* 시미즈 스미꼬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없다면 벌써 아무것도 안해도 될일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미 모든 것이 완결되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러면 일·한조약인 이 청구권 협정에서 누락된 것은 무엇입니까?

* 정부위원
결론부터 말한다면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일·한 양국간에 있어서 청구권 문제는 이 협정으로 최종 그리고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 시미즈 스미꼬
그러면 북조선 사람들은 제외되어서 그 중에 포함되지 않았군요. 그리고 사하린 친류의 한국인 재산이나 청구권 보상, 재일 한국인도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가요?

* 정부위원
일·한 양국간에 있어서는 제외된 것이 없다는 뜻이고 북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드디어 현재 국교정상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또한 사하린 관계에 있어서도 이 일·한 협정은 한국인이라 하는 즉 한국의 국적을 가진 분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 사하린에도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라면 이 일·한 협정에 해당되는 것이 됩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한 사할린에 있는 조선사람은 대부분 북조선의 국적을 가졌거나 또는 소련 현재의 러시아인 겁니다. 또는 무국적의 사람 들로 들고 있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그렇다 해도 일·한 조약협정 제 2조 1항에서 말하는 재산, 청구권이라 하는 것에 의해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늘 말하듯 일·한 양국의 외교보호권의 문제이고, 양국민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란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든간에 국가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될줄로 압니다만 어떻습니까?

* 정부위원

방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선생에게 말한 적이 있듯이 또한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소위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조약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조약을 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국내법적 의미로 직접 소멸시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약간 보충시킨다면 이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 제 2조의 3항에 구체적으로 청구권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방의 조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처리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만 여기에서 「일방의 조약국 및 그 국민 및 이익」, 그 다음은 좀 길어짐으로 뛰어 넘습니다만 「-」에 대한 조치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가 없다」는 형의 소위 외교보호의 포기란 것을 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에 있어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재산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이 합의 의사회 쪽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재산, 권리, 이익」이란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로 정해져 있는 탓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군위안부의 청구권 문제라 하는 것은 실체적 권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만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재산이나 실체적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소화 40년 당시 국내법을 제정했으므로 한국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실체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멸시켰다는 해석이 있는 까닭입니다.

일본 제 123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제 14부)

평성 4년 4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1분 개회

* 시미즈 스미꼬

오늘 나는 전후 보상에 있어서 개인의 청구권 및 정부의 기본적 인식과 그 자세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정부는 전쟁희생자 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하여 발생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및 보상문제를 국가 간의 외교 보호권에 의해 이미 모든 해결은 매듭되었다고 하는 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및 아세아 제국으로부터 이러한 일본의 전후 보상처리에 대한 물음의 소리가 높아져 오고 있다는 그 이유는 역시 미·소 냉전이 무너진 현재,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시아의 민주화가 급진전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되며 그것이 국제적으로 보아도 개인의 인권 확충과 국제 인권보장의 규범이라는 관점으로 부터 이런 저런 과거의 문제 처리방법에서 오늘의 인권이라는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중시해 갈 때 그러한 대단히 큰 세계의 민주화 흐름이라고 생각되어 지지만 정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극히 기본적인 인식과 시책으로서의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문제를 인권의 관점으로부터 전후 보상과 청구권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 시미즈 스미꼬

다음으로 종군위안부 문제로 옮기기 전에 우선 군사우편 저금에 대한 취급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얼마만큼의 구좌가 있는지? 그리고 개설수는 얼마나 되며 잔고액은 얼마나 되는지?

* 정부위원

평성 3년 3월 말 현재 구좌수가 약 73만 구좌에 금액을 약 21억 4천 9백만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야전 우편국 폐국후에 입금된 예금자 보호의 조치는 어떤 경과로 취하여 견언가를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 정부위원

야전 우편국 등이 최후로 폐쇄당한 것은 전후 소화 21년 5월 까지였습니다. 종전 직후 인플레이션의 원장 방지 등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20년 10월 이후는 지불 제한이 시행되었으므로 당시의 우정성으로서도 예를 들면 G.H.Q 등에 대해서도 그 지불 보증의 필요가 있는 요제, 기타 제한 완화에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소화 21년 이후 서서히 지불 제한이 완화되어서 선생께서도 아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소화 29년 5월에 군사우편저금 등 특별 처리법이라는 것이 제정

되어 지불제한이 해제된 경위가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불장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 30년부터 32년에 걸쳐 국내주소로 판명된 대상자들의 예금자 입니다만 약 52만 명에 대해 이용권장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간 약 20만명으로 부터 환불요청이 있어 처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재산권 등에 관한 국가간의 특별한 결정에 관한 교섭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추이를 지켜보고 오는 바임으로 이 군사우편 저금의 환불에 대한 권장 등 특별한 환불 촉구의 착치 등은 실행되지 않았던 모양으로 인식되어집니다.

* 시미즈 스미꼬

그렇다면 특히 일·한 청구권 협정의 기초가 되는 우정성령 제 43호의 소위 대상외의 지역, 예를 들어 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국 등의 소재자인 예금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 군사우편 저금의 환불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까?

* 정부위원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선생께서 지금 지적하신 일·한협정과 같은 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 취급의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사람의 군사우편 저금에 있어서는 일본 국내에 있어서 환불청구가 있으면 확정되어 있는 채무라는 인식을 저금의 경우에는 하고 있으므로 법적 지불의무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북조선의 경우입니다만 현재 일·조 국교정상화 교섭에 의해 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 협의 중이므로 그 귀취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시미즈 스미꼬

최근 원위안부의 문옥주씨가 버마와 타이의 전선에서 군사우편의 저금을 했다고 그의 환불을 위해 일본에 왔지만 이것은 일본의 국내법으로 조치한 권리의 소멸임으로 결국 환불은 거부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옥주란 사람은 전쟁 희생자이며 또한 일·한 청구권 협정의 이중 희생자가 된 셈입니다. 우정대신은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 행정을 할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답변 중에 환불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금액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그러한 분들의 환불에 따르는 예금자 보호의 원칙을 무엇인가 지켜 보려는 입장이 될 뜻은 없으신지요?

* 국무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날, 전쟁으로 인해 심한 고초를 당한 원 종군위안부 여러분의 심신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한국의 그들이 제출한 군사우편 저금에 대한 권리문제란 우정성으로써는 소화 40년에 체결한 소위 일·한협정 및 관계법률에 따라 대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지난번부터 여러가지 의론이 나오고 있는 바이지만 우정성으로서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 시미즈 스미꼬

이 때까지도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대단히 침해 당하고 있다는 일들이 들어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것들은 앞으로 역시 어차피 다시 한번 더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실은 이 곳에 소화 19년 1944년에 만주의 석문자 1013 부대가 사용한 위안권철이 입수되었습니다. 이것에는 1박 이라든가 또한 병사, 그리고 하사관, 모두 이처럼 부대에 전부 이와 같은 사용권이 담당자에 의해 개찰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 보았습니다만 위안권을 철한 것과 일요일마다 40-50명 중에 12, 3명씩 배정당한 현지 주둔지 사령관 발행의 특별매전세 면제표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군인으로부터 나에게 부쳐 왔습니다. 이 면제표를 가지고 가면 위안소의 요금이 1원 50전이 1원에 되는데 즉 30% 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군은 위안소 경영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세액을 나름대로 정해서 위안소 업자로 부터 특별 전매세라는 명목으로 세를 징수하여 군 경리에 수입으로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 명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 육군이 아편 취급을 한 행위와 같은 것처럼 군의 아르바이트로서 적극적으로 위안소 설치에 주력을 둔 것은 아닌지요? 바꾸어 말한다면 군의 위안소 설치 목적이 병사들의 성적 위안이나 군의 규율 유지에 편승하여 군의 독자적 재원을 얻기 위해 위안소 설치를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만 이것, 대신님, 제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대신, 졸지 말아주세요.

* 정부위원

추측의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했는지는 지적하신 자료만 가지고는 무엇이라 답할 수 없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중요한 문제이오니 제발 대신님, 졸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성의없는 답변을 적당히 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역시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청의 군의 여집단(呂集團) 특무부 이군요. 그리고 번호 58번입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아편 취급소의 설치나 위안소의 설치도, 세금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다분히 이러한 서류 가운데 공문서 중에 '세'라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무슨 뜻인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드디어 이것으로 위안소가 군이 독자적인 재원을 마련키 위해 필요로 해서 확대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진상의 조사를 요구하고 싶으니 이것을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부요원

지적하신 목적으로 세가 징수되고 있었다는 것을 제시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 시미즈 스미꼬

조사해 줄 것을 나는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